

대금업법이

초래한 부작용

~ 상환 곤란자는 금융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구제해야 한다~

도쿄정보대학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

2006년 법 개정의 사회적 배경

- 민사법인 이자제한법상 상한금리(원금에 따라 연 15~20%)를 초과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2006년 1월 13일 대법원 판결
- 대형 대금업체인 아이후르의 ‘가혹한 추심’ 녹음 테이프
- ‘다중채무자 200만명’이라고 하는 언론보도
- 자살자 중 3만명을 넘는 수가 고금리대출이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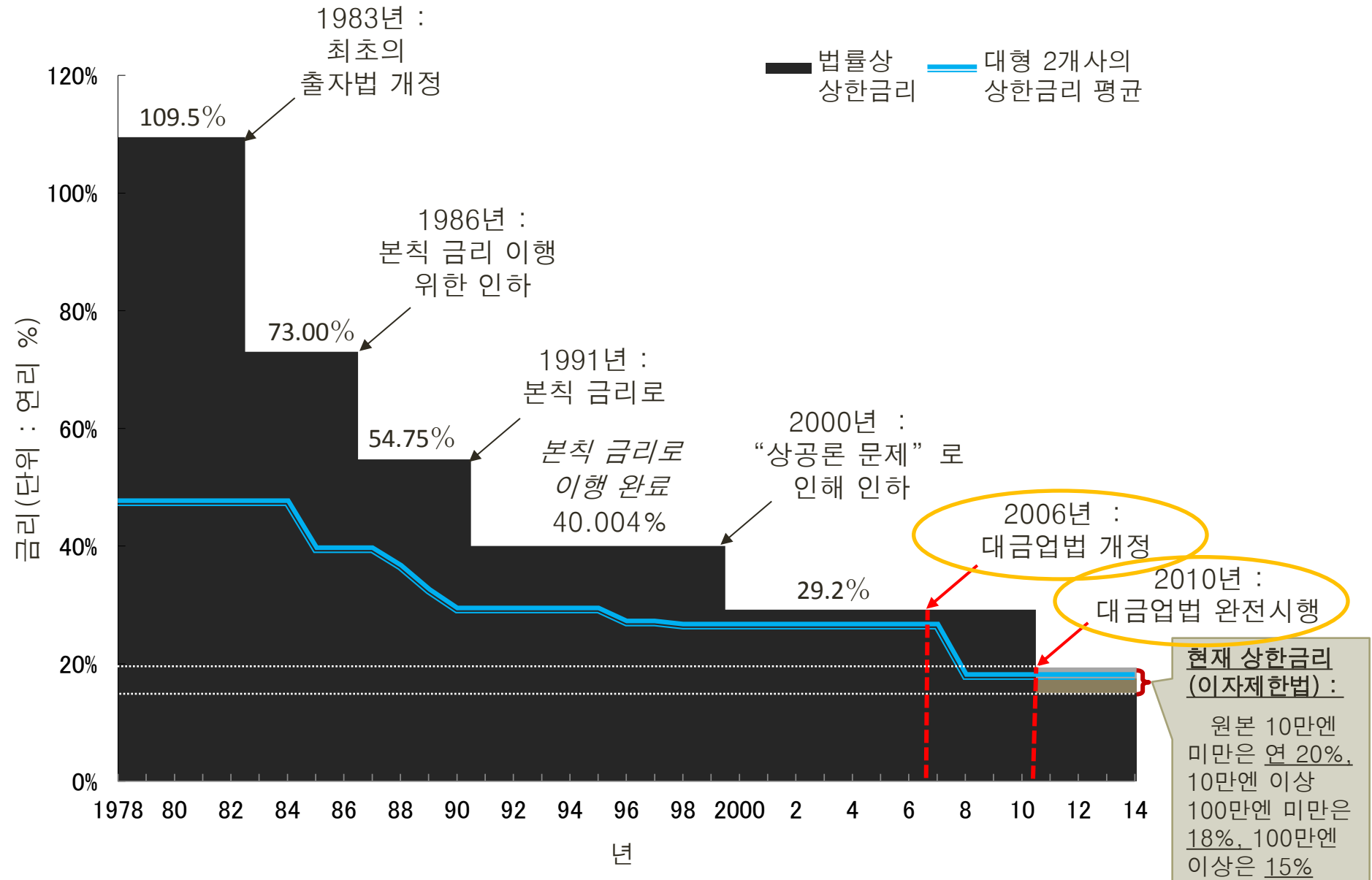
대금업법의 주요 포인트

1. 상한금리를 연 29.2%에서 연 15~20%로 인하
2. 심사 시에 원천징수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소득의 1/3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총량규제).
3. 정부가 지정한 신용정보기관이 이용자의 채무현황을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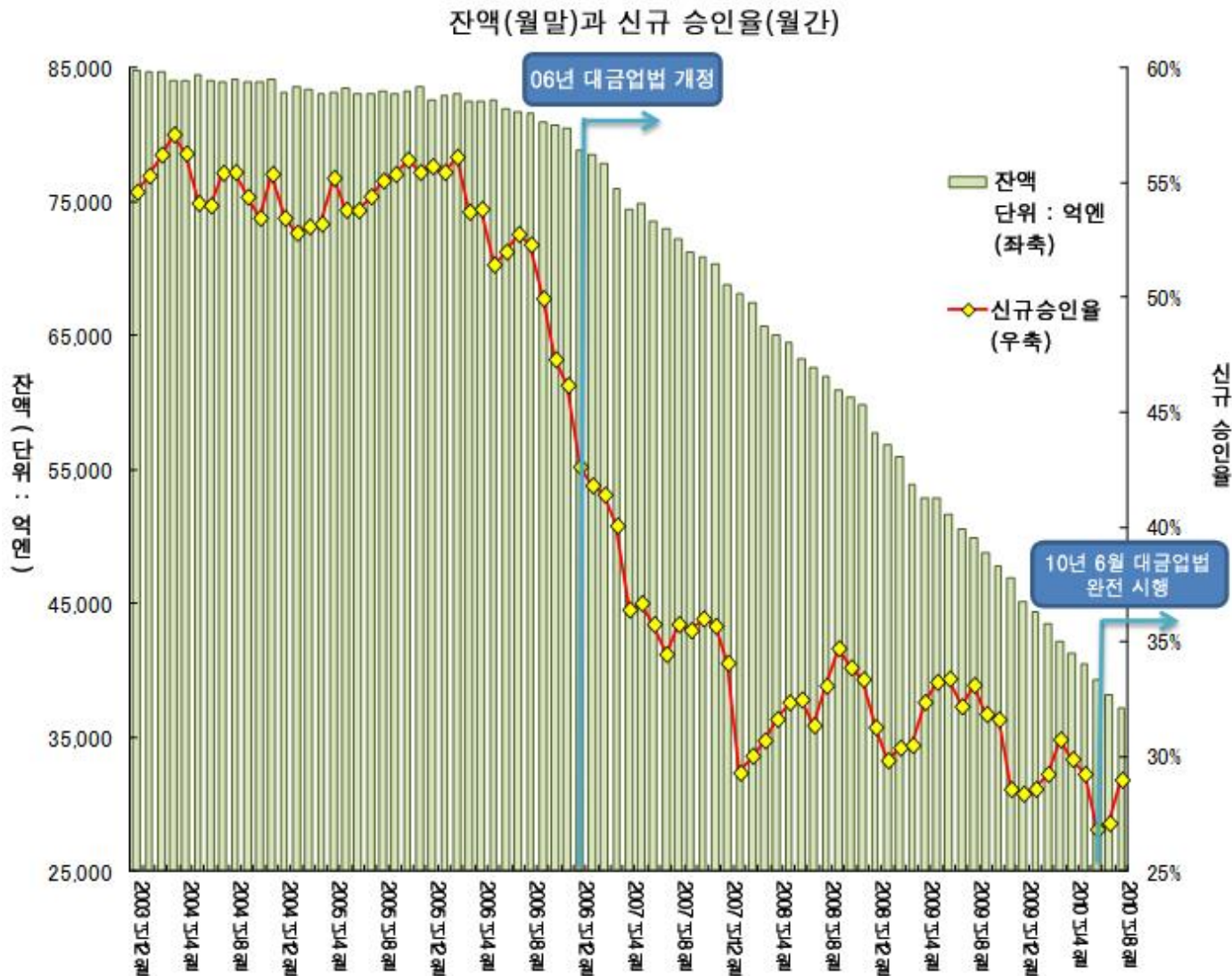
일본의 상한금리 규제

- 두 개의 법률에 따른 상한금리규제
- 민사법인 이자제한법 :
 - 원본 10만엔 미만은 연 20%,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은 18%, 100만엔 이상은 15%로 규정 (1954년 5월)
- 형사법인 출자법 :
 - 연 29.2%에서 20%로 인하(2006년에 개정, 2010년에 시행)
- 출자법상 상한금리를 실질적으로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 :
 - 이자제한법상 상한금리를 초과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판례(2006년 1월)

법률상 상한금리와 대금업체 대형 2개사의 상한금리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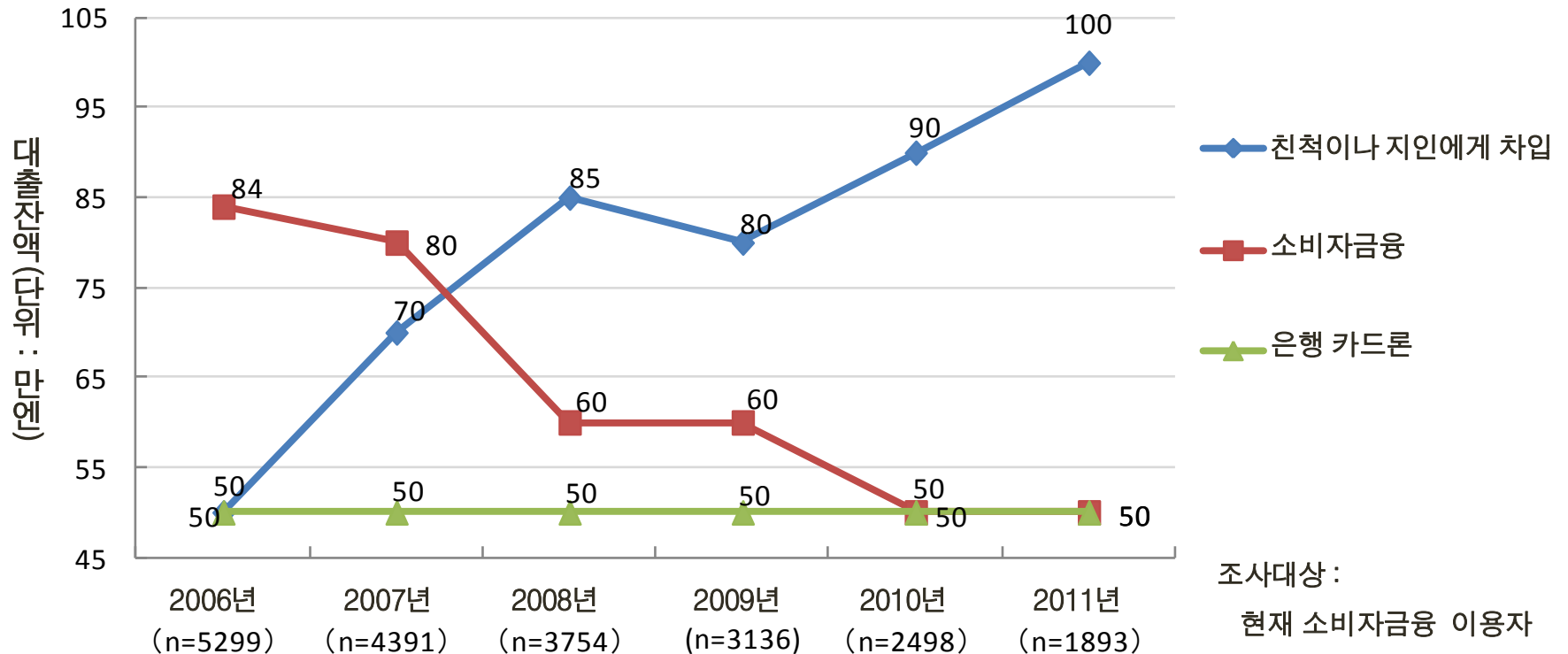
잔액과 승인율의 추이



※ 주의 : 조사대상인 다케후지 파산 직전(2010년 8월)까지 집계

자료 : 소비자금융 대형 7개사 대상 앙케트 조사(2010년 10월)

현재 소비자금융 이용자의 대출 잔액(중앙치) 추이



소비자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잔액은 84만엔(06년)에서 50만엔(11년)으로 감소, 친척이나 친구에게 빌린 채무는 50만엔(06년)에서 100만엔(11년)으로 증가

◆ 주의 : 현재 소비자금융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은행 카드로 현재 이용률은 31.7%(06년), 32.9%(07년), 33.1%(08년), 31.8%(09년), 34.7%(10년), 36.1%(11년). 마찬가지로 친척이나 지인에게 빌린 현재 차입률은 21.4%(06년), 24.6%(07년), 20.4%(08년), 22.4%(09년), 20.2%(10년), 22.1%(11년).

상한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
(1)

① 디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시킨 대금업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실제로 상환이 가능한 층의 대부액까지 감소하고
있는 상황

개정대금업법 지식인(1)



+ 답변추천하기

공유하기

◆ 문제 :

A라는 남성은 친구인 B에게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귀찮아진 B는 A에게 “앞으로는 이자도 받을 거야”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A는 B로부터 **1만엔**을 **18일간** 약정하고 값는 식으로 몇 차례
빌렸습니다. 그렇다면 B는 개정 대금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A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얼마의 이자**를 취하면 체포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선택지】

- ① 100엔 ② 300엔 ③ 1,000엔 ④ 3,000엔

개정대금업법 지식인(2) 해결 완료 질문



□ 답변 :

① ~ ④까지 모두 정답입니다.

- ✓ 금리를 규제하는 출자법의 경우에는 개인간 대부에 대한 상한금리는 연 109.5%(1만엔을 18일간 대부한 경우의 이자는 540엔)까지이며 “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상한금리는 연 20%(1만엔을 18일간 대부한 경우의 이자는 98엔)까지입니다. 따라서 개인간 대부일 경우 ③과 ④는 정답이 됩니다.
- ✓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대부를 하는 B의 행위는 “개인간 대부”가 아닌 “업”으로 간주되어 무등록업자에 해당하여 대금업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이를 회피하기 위해 B가 A를 위해 대금업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각 선택지의 금리수준은 상한금리에 저촉되어 출자법 위반이 됩니다(이러한 경우 B는 98엔 이하의 이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모든 선택지는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 ✓ B는 신용정보기관의 회원이 되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총량규제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초과했을 경우 대출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 ✓ B 씨, **지인간 대부**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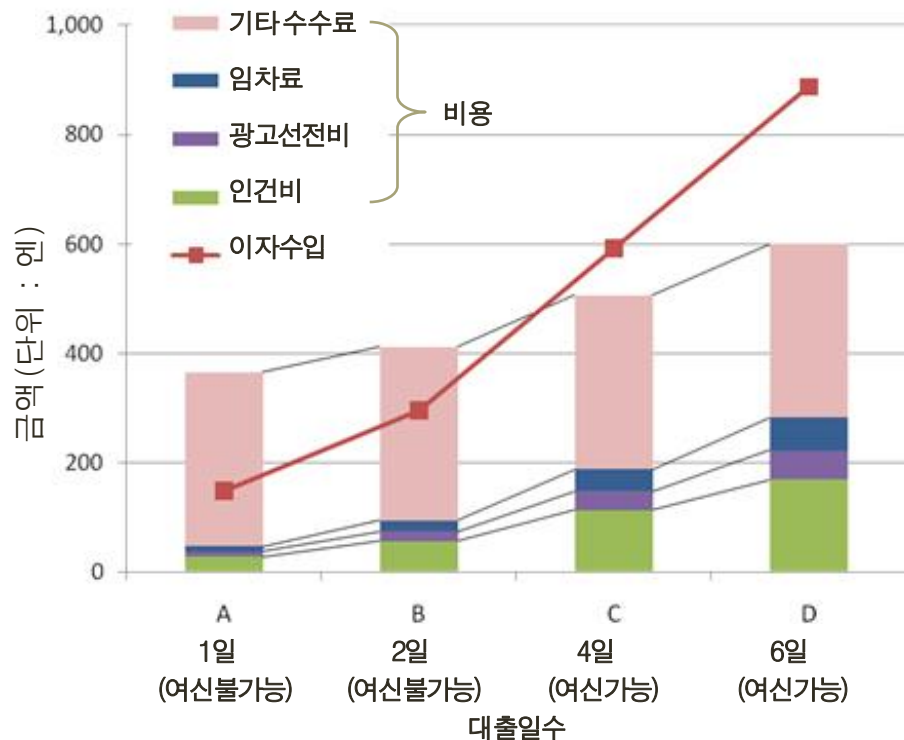
◆ 그렇다면 법률에 의해 여신이 불가능해진 소액·단기 대출은 어떠한 이들이 적극적으로 공급하려 할 것인가?
⇒ 힌트는 본 자료 [30페이지](#) 슬라이드 참조

여신 불능이 된 소액 · 단기 대출 (대출일수와 금액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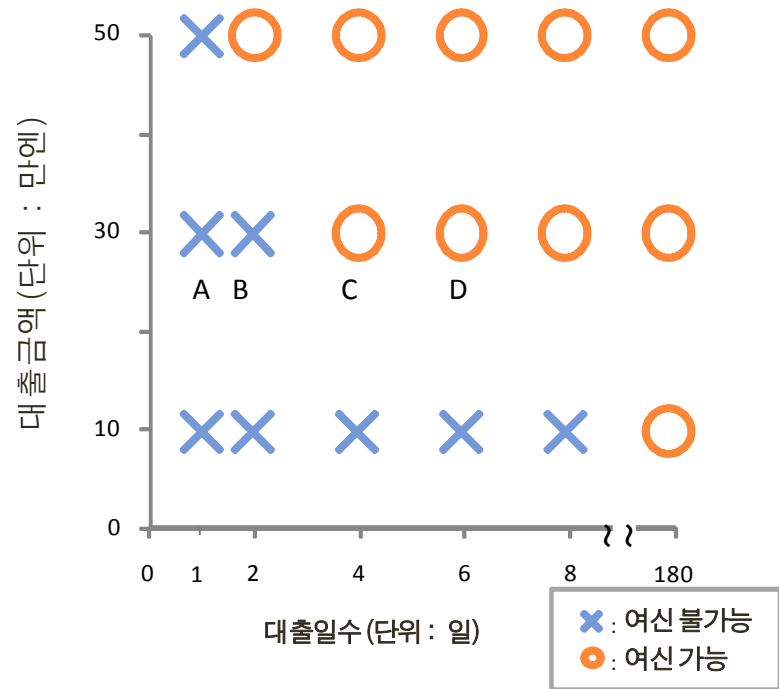
✓ 소액 · 단기대출의 수익성을 대출일수와 금액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 손익분기점의 시산

(a) 대출금액 30만엔 · 금리 18%의
대출기간별 이자수입과 비용



(b) 금리 18%의 여신 가능·불가능 패턴
(대출일수와 금액)



주의1: 전제로 “조달비용 없음”, “대손비용 없음” 으로 가정. 하지만 실제로 대형사의 경우 대출잔액 대비 2% 정도의 조달비용과 8~10%의 대손율이 발생한다.

주의2: 상기 비용구조는 상장 대형 4개사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추계했다.

해외 금리 규제 : 2005년 당시 금융청이 입법부에 설명 시 사용한 자료

2005년 12월 8일 기준

대금업에 관한 국제 비교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록 규제	금전 대부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주법에 따른 면허제 【예:NY주】 개인 대상 대출로 25,000달러까지 이율 16%를 초과하는 대출을 업으로 하는 경우		2만 5,000파운드 이하의 개인 대상 대금업의 경우에는 소비자 신용법에 따른 면허제 * 개정법에 따라 대부금액의 상한이 없어진다.	은행만 대금업을 할 수 있음 (은행법에 따른 면허제)	통화 금융 법전에 따른 면허제 (은행 또는 금융회사의 면허)
금리 규제	상한규제 있음 이자제한법(민사) · 10만엔 미만 ⇒ 20% ·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 ⇒ 18% · 100만엔 이상 ⇒ 15% 출자법(형사) · 사인간 ⇒ 109.5% · 사업자 ⇒ 29.2%	연방 규제 없음 * 대법원 판례 (금리수출이론) 「연방은행은 본점 등기한 주의 금리를 타 주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 자유금리를 채택한 델라웨어주 등에 본점이 집중되는 현상 초래	주 【예:NY주】 주 은행법(민사) · 16% 비면허업자에 대한 상한규제 주 형법(형사) · 25%	규제 없음 · 단 소비자신용법에 따라 폭리적 신용거래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이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규제는 없음	규제(판례 법리) 있음 · 시장금리의 2배 또는 <u>플러스 12%</u> 를 초과하면 민사상 무효 · 형법에 따라 상기 금리를 초과하면 폭리행위로 간주되어 일정 요건 하에 채권자는 처벌	상한규제 있음 (소비법전(형사·민사)) 평균 실질 이율의 4/3를 초과하는 이율은 폭리적 이율로 간주된다(민사상 무효·형사상 처벌) (2005년 제1사분기 폭리적 이율) 1,524유로 이하 ⇒ 19.60% <u>1,524유로 초과</u> ⇒ <u>8.87%</u>

(주) 일본, 미국(NY주, 캘리포니아주), 독일 및 프랑스에서는 개업규제로 인적 구성 외에 재산적 기초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참고) 2004년 9월~2005년 1월 평균환율은 1달러=105엔, 1파운드=198엔, 1유로=137엔(일본은행 자료)

해외 금리 규제 : 프랑스의 상한금리가 외관 상 낮은 이유

◆금리 개념 :

- ✓ 대출 실행 시에 예상되는 필요 경비는 모두 금리 취급
- ✓ 이에 비해 예상하지 못한 경비의 경우 금리와는 별도로 청구 가능

➢ 기일 전 상환수수료, 연체수수료, 각종 통신비 등

【현실 금리】

✓영국 정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

■ 프랑스의 수수료를 가미한 실질금리:

평균: 29.4%

출전 : UK Government, "A Better Deal for Consumers" , July 2009

■프랑스의 유력 소매체인점 카드 사례

- ✓ 대출금액 : 1,400유로(약 21만엔)
- ✓ 상환금액 : 매월 60유로(약 9천엔)을 상환
- ✓ 상한금리 : 17.16%(2007년 기준치)

《금리 범위 외에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

- 연회비 : 14유로(약 2,100엔)
- 지연손해금 : 1년간 3회 상환이 지체되었다고 가정

지연 손해금	연체금액
15유로	50유로 이하
20유로	50~150유로
25유로	150유로 이상

- 지불보증 보험료(옵션) : 매월 대출잔액의 0.45%

【실제 적용금리(1년간 누계)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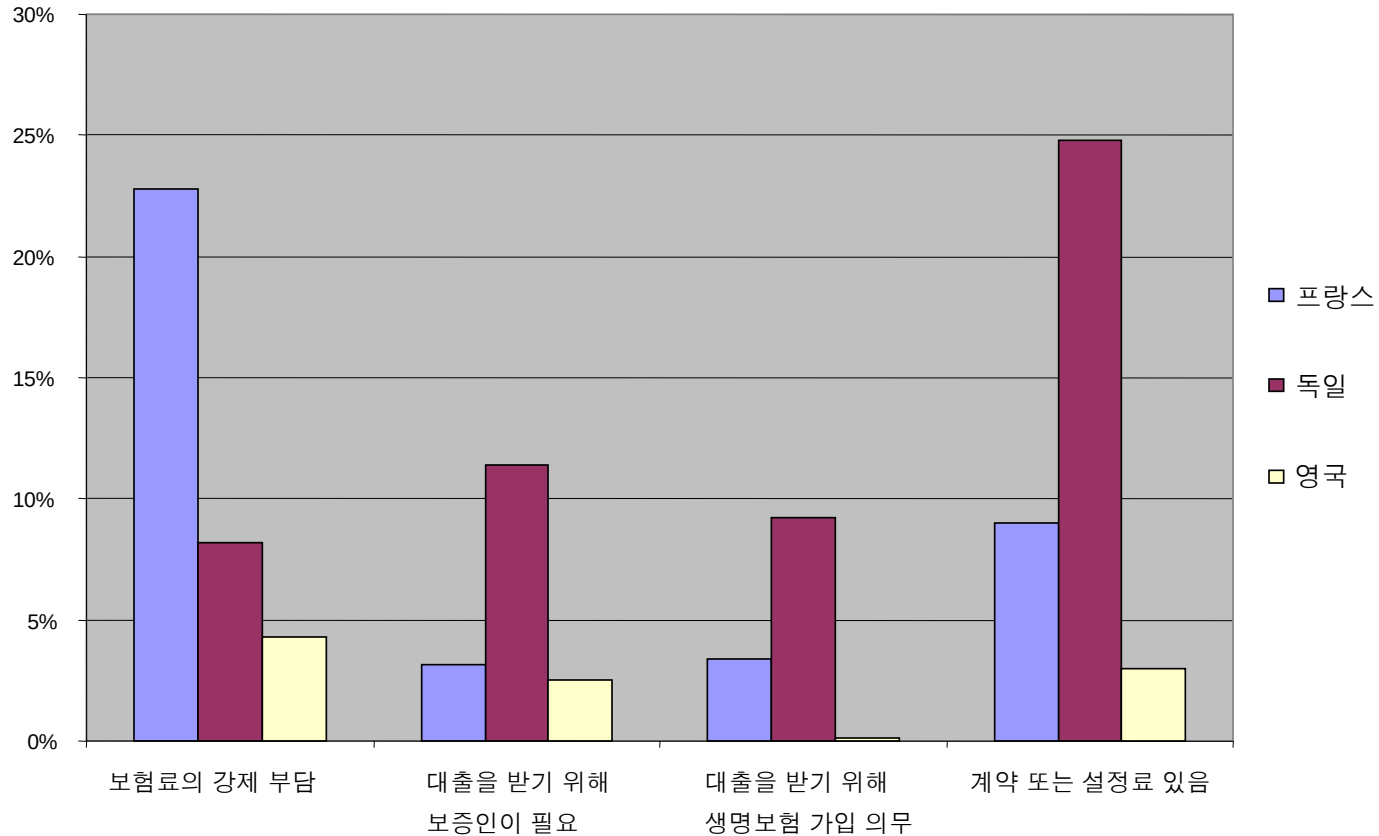
표면금리	17.2%
연회비	1.0%
지연손해금	4.3%
지불보증 보험료	4.8%
누계	27.3%

※ 지불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23%로 한다.

※ 1유로=150엔으로 계산

※ 상기 추계는 개략적인 계산으로 일반적인 채무자의 정확한 코스트 추계는 아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고리스크 신용 이용자는 영국의 채무자보다 **다양한 제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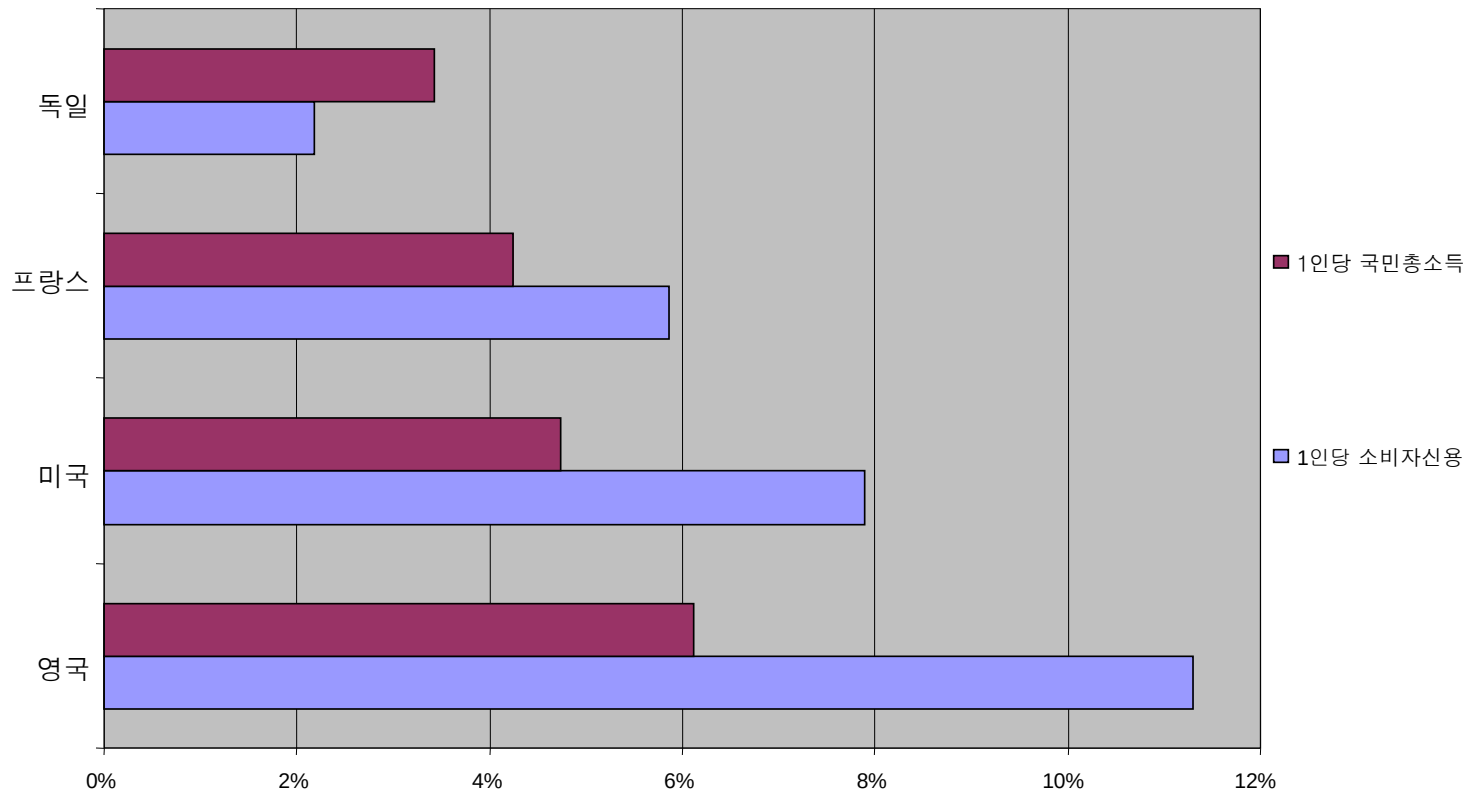
기수 : 신용 이용자

출전 : Taylor Nelson Sofres Research for Policis 2004

(2004년 Taylor Nelson Sofres가 Policis용으로 실시한 조사)

급속하게 신용시장이 성장하는 국가는 GDP 증가 등 빠른 **경제성장을** 보인다.

1996~2006년 1인당 국민소득과 소비자신용의 성장



자료 : 내각부 규제개혁회의(제8회 생활기반TF의사개요) 「대금업 제도에 관한 해외사례」(2008년 11월 19일)

본 자료는 내각부 규제개혁회의가
영국정부의 의뢰로 조사를 실시한
영국의 조사기관을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했을 때 사용한 자료

경제 파급 효과 시산

시산 케이스 1

이다 다카오 (삿포로대학)

◆ 상한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 효과만을 시산

✓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 일본의 GDP에

적어도 -6조엔 정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추측

출전 : 이다 다카오, 가토 아키라 「상한금리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이미 6조엔의 명목 GDP가 소실되었다」

금융재정사정(2010년 6월호)

시산 케이스 2

이와모토 다카시 (게이오대학)

◆ 과불금 반환 청구에 따른 경제효과도 가미하여 시산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 일본의 GDP에 미치는 영향은

-8조 ~ -18조엔으로 예측

출전 : 이와모토 다카시 외 4인(2013년 10월 13일)

「『개정 대금업법』에 관한 경제적 영향 시뮬레이션」

퍼스널파이낸스학회(제14회 전국대회)

상한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2)

② 법 개정으로 발생한 계층간
신용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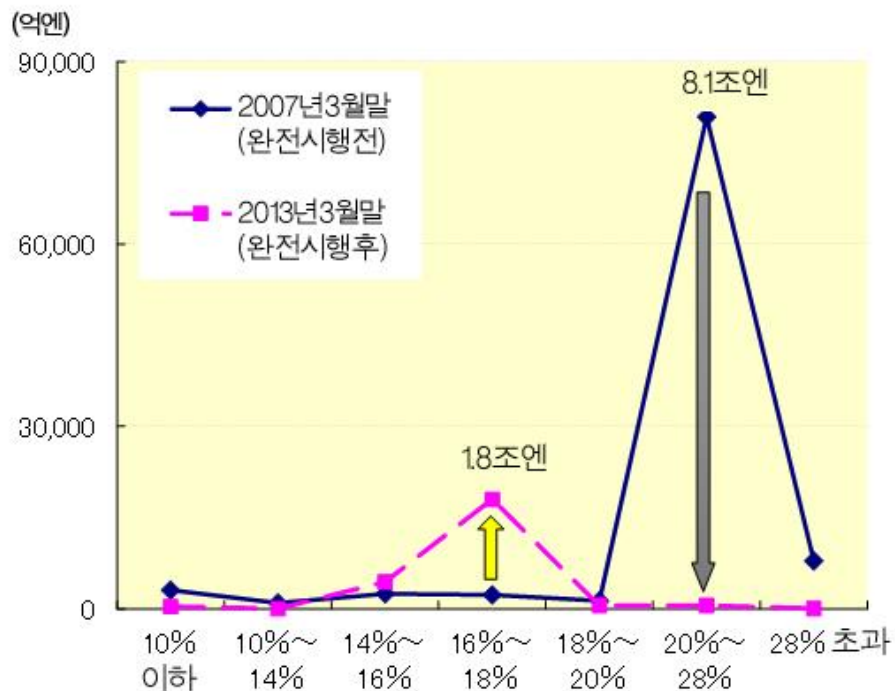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불행」 해진 사람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 공무원과 한층 더 대출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층의 격차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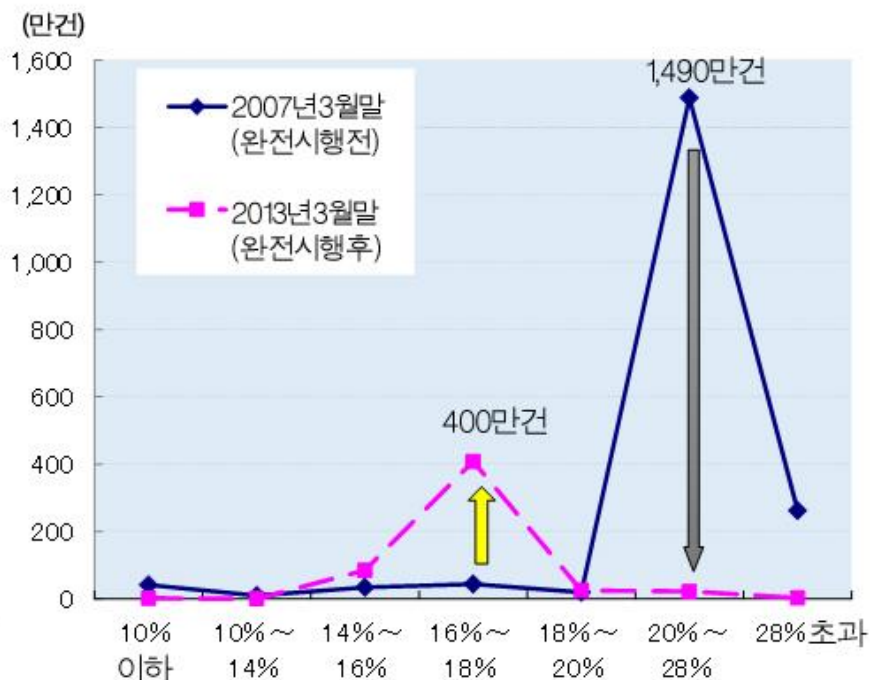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자의 대부잔액 · 건수 추이

~ 완전시행 전후의 비교 ~

대부잔액(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자)



대부건수(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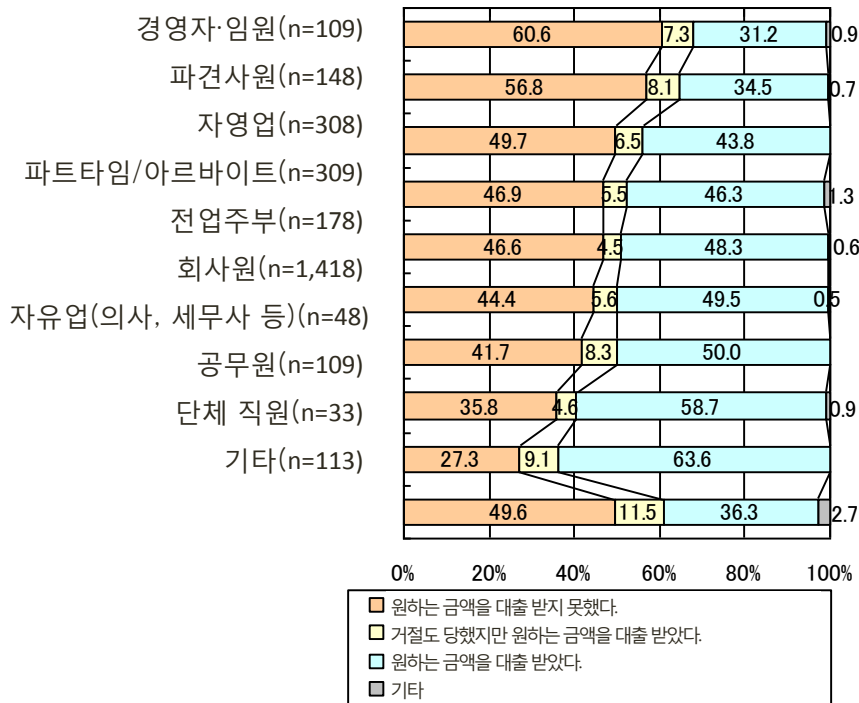
상한금리 인하로 영향을 받은 속성 (2007년 조사결과)

✓ 직업별로 살펴보면 「경영자·임원」, 「파견 사원」, 「자영업자」 등이 먼저 대출을 거절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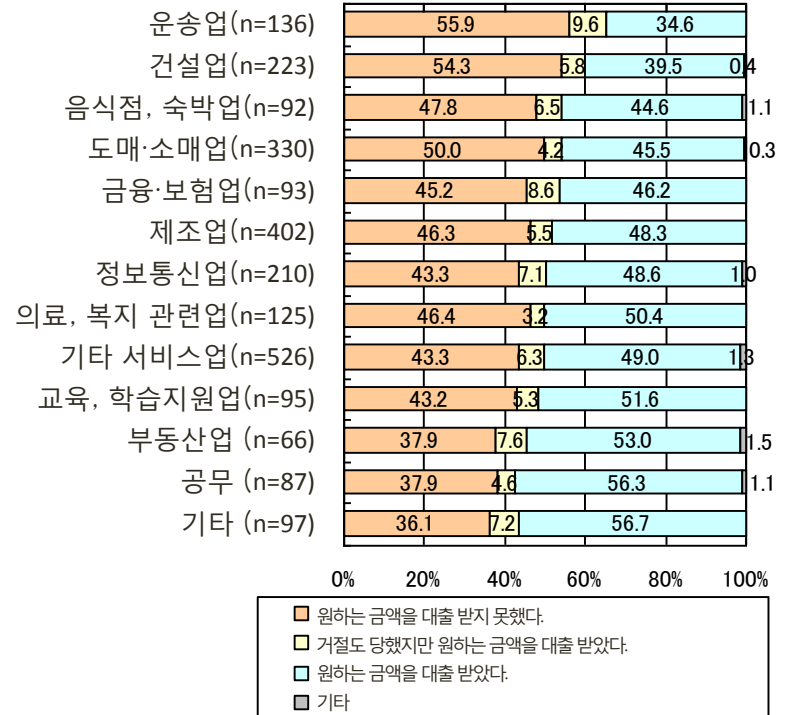
✓ 근무지의 종업원 규모가 작을수록 대출을 거절당했다.

✓ 업종별로는 「운수업」, 「건설업」 과 같은 노무계열, 「음식점·숙박업」 등의 종사자가 대출을 거절 당했다.

직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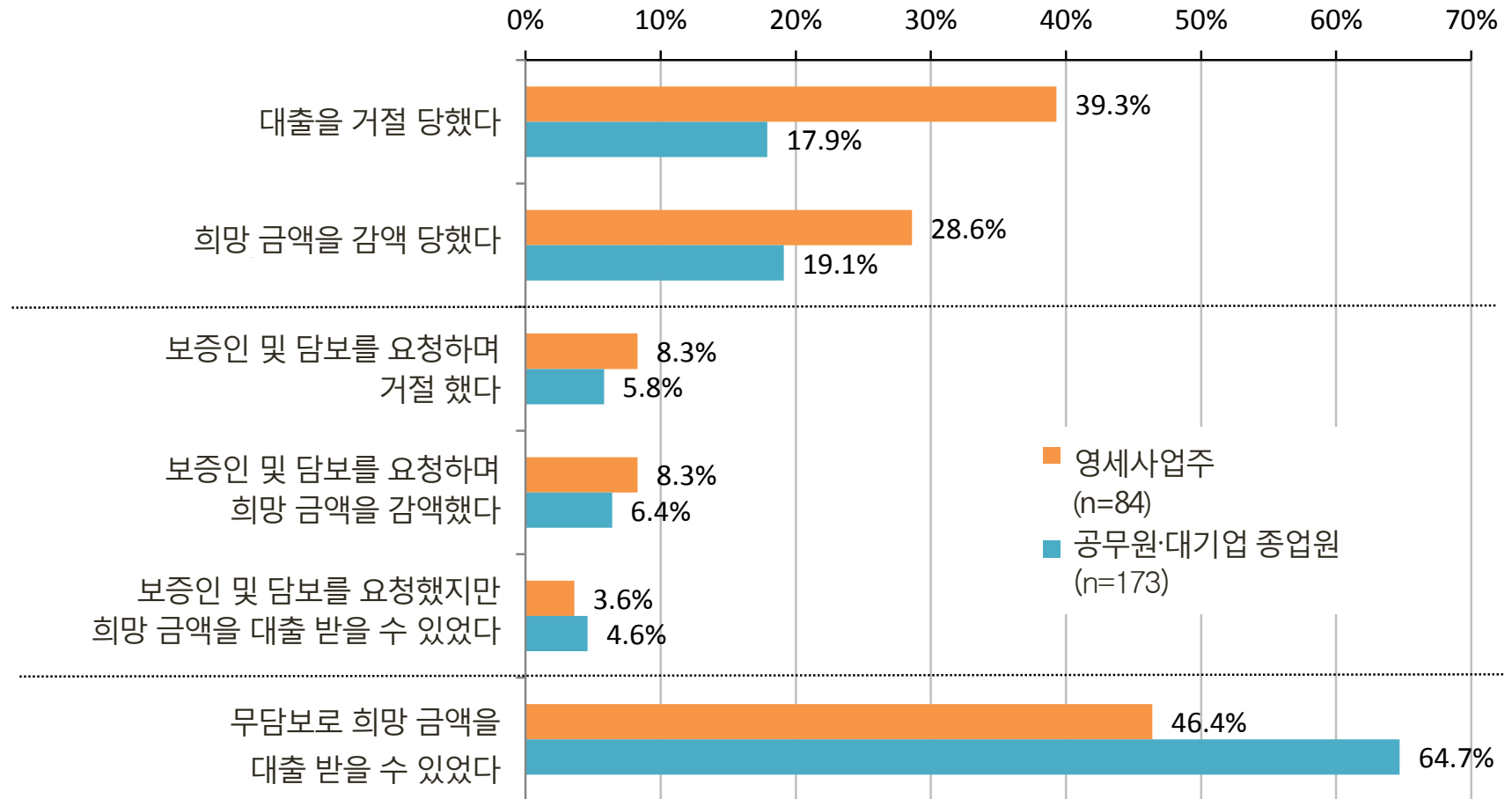


업종별



완전시행 후 영세사업주의 대출 신청 결과 (2013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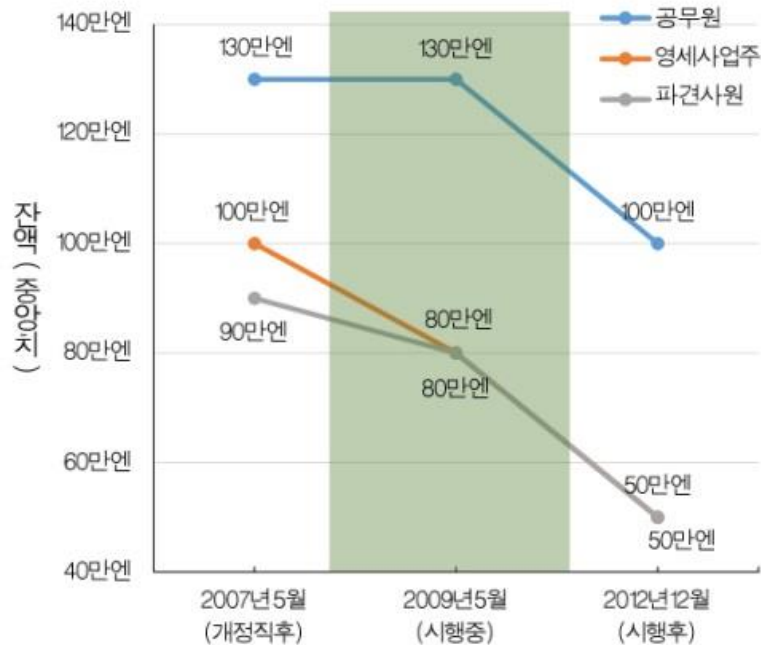
대금업법 완전시행(2010년 6월)이후의 대출 신청 결과
(2010년 6월 이후의 대출 신청자 중 「영세사업주」와 「공무원·대기업 종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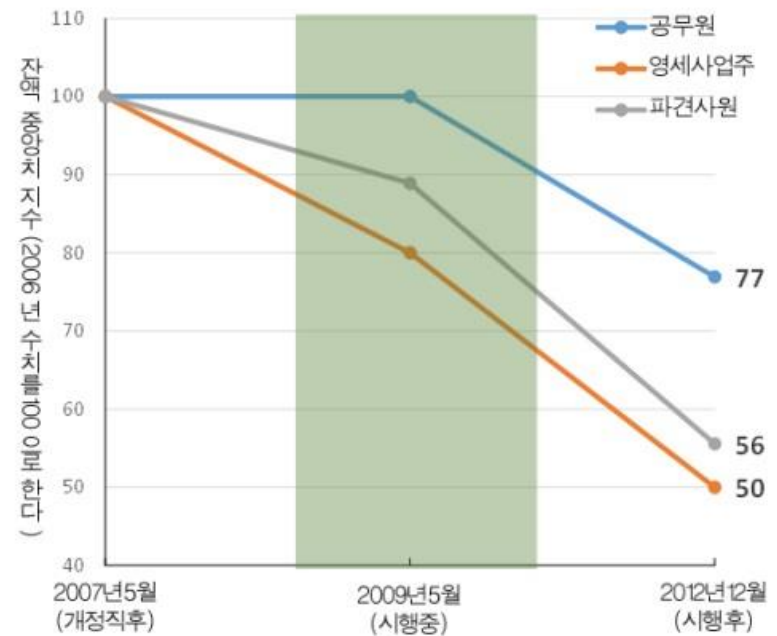
완전시행 후 영세사업주의 여신한도 (2013년 조사)

소비자론의 직업별 1인당 대출잔액 추이

(a) 금액의 추이



(b) 2007년 5월 금액으로 규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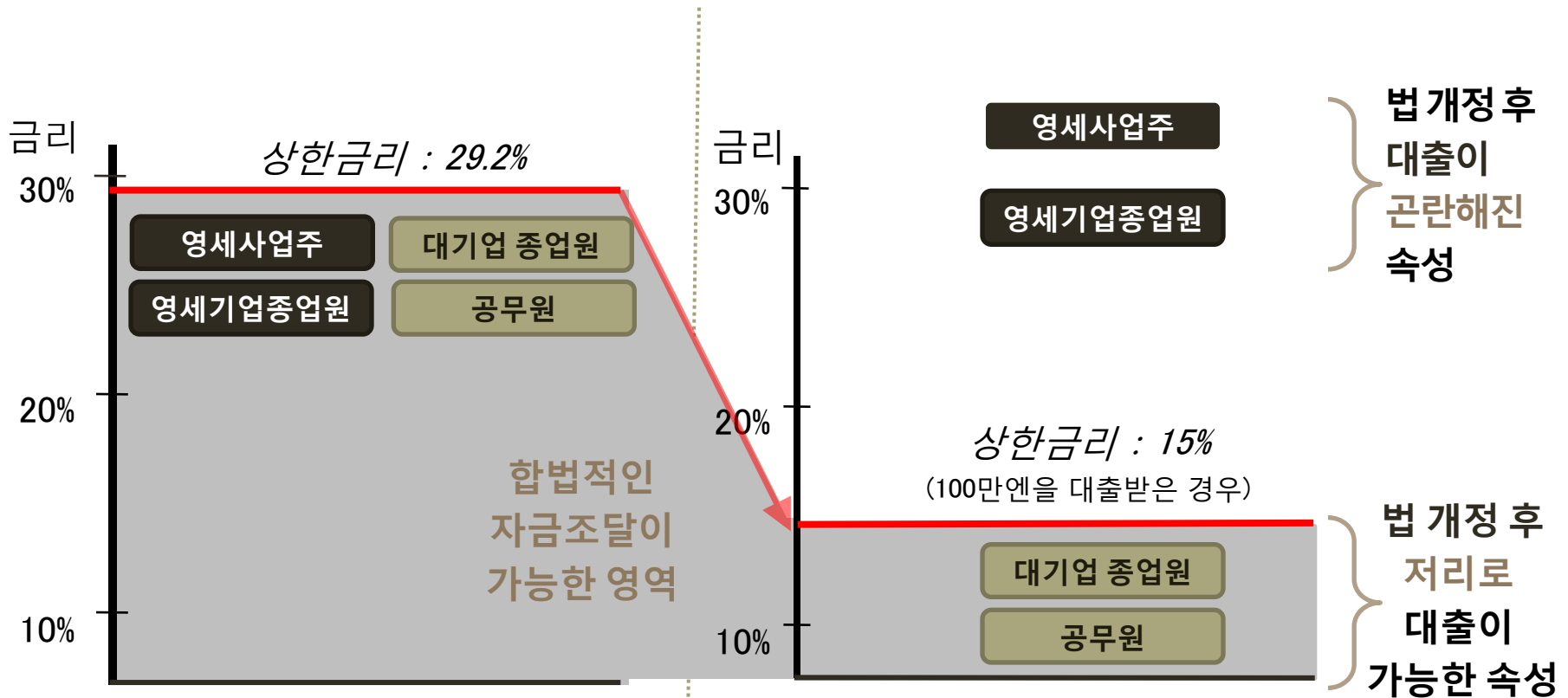
영세사업주의 대출잔액은 100만엔(07년)에서 50만엔(12년)으로 감소(50% 감소).

공무원의 대출잔액은 130만엔(07년)에서 100만엔(12년)으로 감소(23% 감소).

◆ 주의 : 소비자론의 직업별 대출잔액 집계 시 샘플 수(n수)는 영세사업주의 경우 740명(07년), 596명(09년), 109명(12년), 파견사원의 경우 389명(07년), 226명(09년), 23명(12년), 공무원의 경우 181명(07년), 183명(09년), 31명(12년).

신용시장의 격차 고정화

법 개정으로 「대출이 쉬워진 층」 과 「대출이 어려워진 층」 의 개념도



(a) 법 개정 전



(b) 법 개정 후

2006년 12월 개정
(2010년 6월 완전시행)

논뱅크를 이용하는 영세사업주 의견

(2009년 인터뷰조사)

- ① 「연체 없이 상환을 잘해온 논뱅크가 대출을 거절. 연말에 신용금고를 통해 세이프티넷 대출을 이용했지만 대출 실행까지 1개월이나 걸렸다. 새해가 되면서 더 이상 자금이 필요 없어졌다.」 (오사카부 · 부동산업)
- ② 「연말 자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세이프티넷대출을 신청. 하지만 엄청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어 연말 성수기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 에코포인트 시행으로 시장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논뱅크의 자금으로 재고를 확보할 수 없어 일부 주문을 받지 못했다. 은행이나 공적 기관은 긴급을 요하는 자금조달에 대응할 수 없다」 (효고현 · 전기설비업)
- ③ 「리먼 사태의 여파로 모 미국계 기업의 극동본부가 일본에서 철수. 이로 인해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던 음식점의 매출이 급감했다. 이 시기는 운이 나쁘게도 논뱅크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직후여서 일시적인 자금 융통 악화를 해결하지 못해 폐업하기로 결정. 공적 기관도 신속하게 대응해주지 않았다」 (오사카부 · 음식점)

논뱅크 대출은 영세기업에게 유익한가? 학술논문 발췌

「논뱅크 대출과 중소기업의 모럴해저드 문제」

쓰루타 다이ске (2005년 11월)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05-J-035,
정책연구대학원 대학

❶ 개요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금융환경 실태조사」의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논뱅크를 이용한 기업을 실증적으로 검증

❷ 결론 요약

1. 논뱅크 이용 기업은 운전자금이 당장 필요한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2. 논뱅크는 중소기업이 자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불가할 때 상당히 편리한 존재**라는 결론

※ 결론 부분은 쓰루타 씨가 작성한 해설 기사(「중소기업이 논뱅크를 이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크레딧 에이지』(2007년 5월))를 인용

「대금업법 개정 후의 기업 자금조달 실태 조사 개요」

우에스기, 우치다, 오노, 고즈카, 쓰루타,
기미와다 외 (2011년 12월)
Design of Interfirm Network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Working Paper Series No.14, 히토쓰바시대학

❶ 개요

2011년 2월에 실시하여 약 900개사로부터 회신을 받은 「대금업법 개정 후의 자금조달 실태 조사」 자료 분석

❷ 결론 요약

1. 대금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제한 받거나 엄격한 대출 조건에 직면하고 있다.
2. 돌발적인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의 특징 :
 - ✓ 90%에 가까운 기업이 1천만엔 이하의 대출금액
 - ✓ 60% 이상이 1년 이하의 대출기간
 - ✓ 50%에 가까운 기업이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

「대금업자와 은행의 심사 방법에 관한 비교 분석」

우치다 히로후미 (2014년 5월)
논문 2014-8,
고베대학 경영학부

❶ 개요

중소기업 대상 앙케트 조사를 통하여 대출 시 대금업자와 은행간의 심사방법의 차이를 대출 기술적인 관점에서 비교했다.

❷ 결론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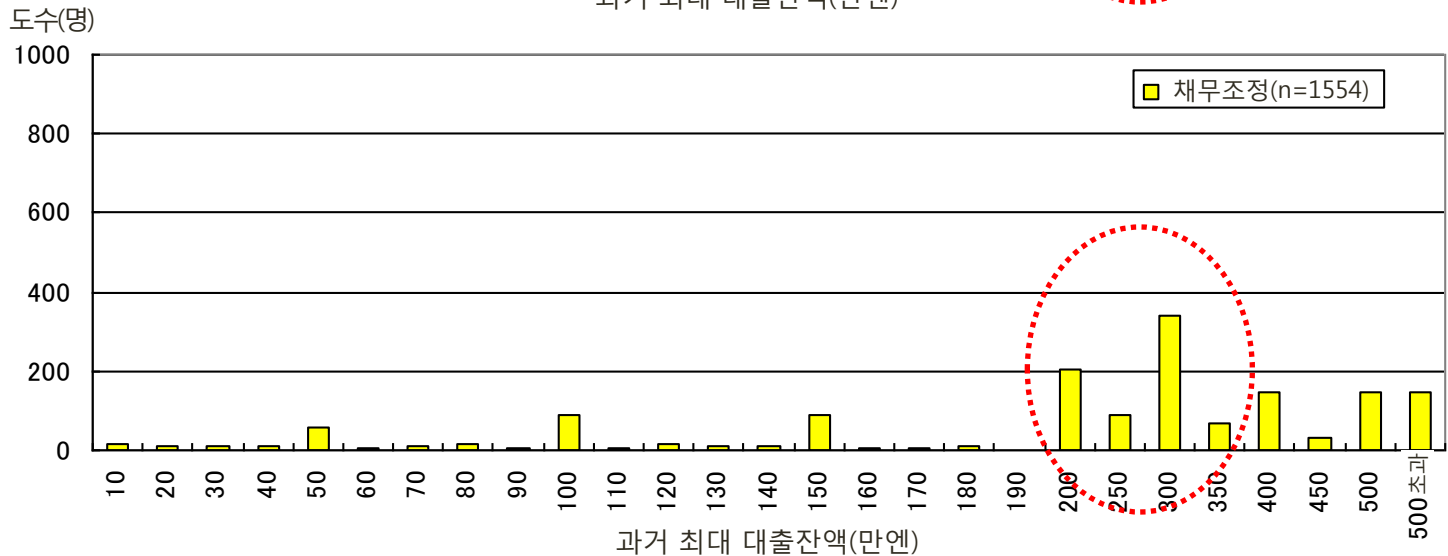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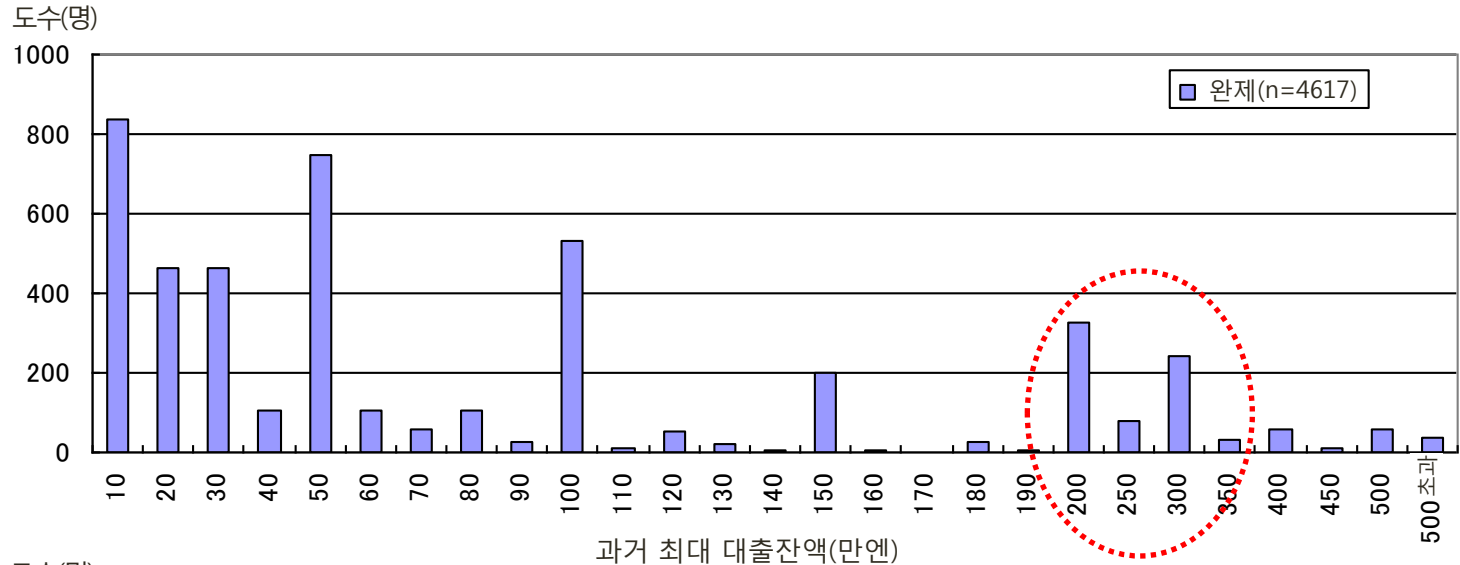
1. 대금업이든 은행업이든 재무제표 대출과 관계 대출이라고 하는 대출 기술 또는 담보·보증의 이용가능성이 중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 다만 ① 은행은 대금업자보다 심사에 신중을 기하는데 비해 **대금업자는 심사의 신속성을 중시하고** ② 은행은 채무자에 관한 소프트정보(경영자 자질 등)를 중시, ③ **대금업자는 그다지 우량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점** 등도 알 수 있었다.

상한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
(3)

③ 방치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불행」 해진 채무자

사법계에서 비대해진 그릇된 과불금 청구 사업과
NPO법인을 이용한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행위 횡행

완제자와 채무 조정자의 과거 대출 잔액 (2006년 조사)



자료 : 소비자금융 이용자 대상 앙케트 조사(2006년 5월, 2007년 5월, 2008년 5월, 2009년 5월, 2010년 7월, 2011년 7월)

채무조정자는 크게 2가지 패턴이 존재

패턴A :

□ 일시에 상황이 어려워지는 패턴

- ✓ 실업·구조조정 및 일시적인 매출 감소로 수입이 감소
- ✓ 「파견사원」, 「영세 사업주」, 「중소기업 종사자」 등

➤ 조기 단계에서의 상황 조건 완화가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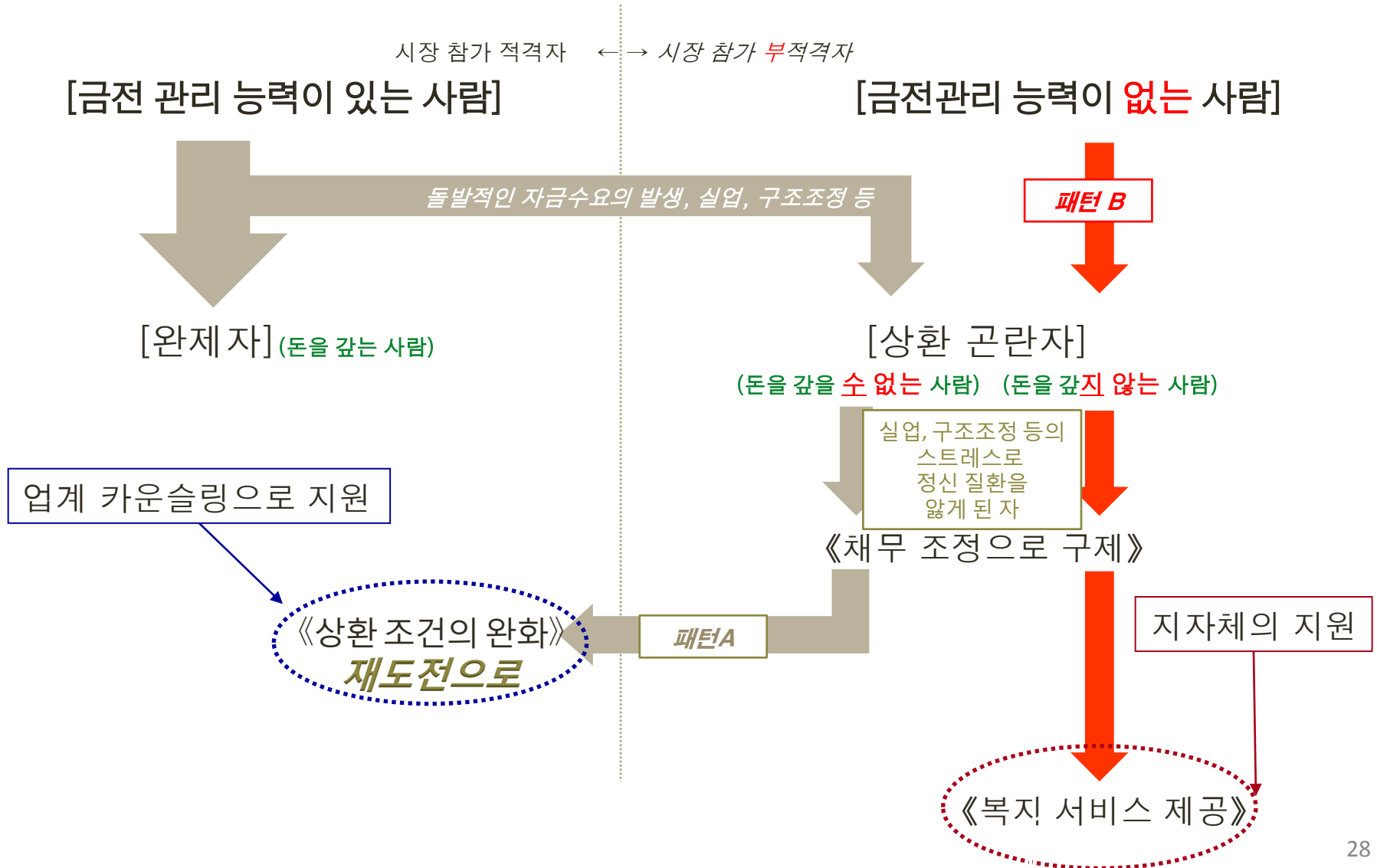
패턴B :

□ 서서히 상황이 어려워지는 패턴

- ✓ 금전 관리 능력이 미숙
- ✓ 발달 장애자의 특징이 엿보인다.

➤ 장기 계속적인 금전 카운슬링이 유효

상환 곤란자 구제



금전 카운슬링은 정말 유효한가?

- 카운슬링이 이후의 채무자 채무 행동에 미친 영향 분석 -

배경 :

다중채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그리고 일반 소비자의 가계 관리에 관한 카운슬링 제도가 세이프티넷으로 제창되어 왔다. 하지만 크레딧 카운슬링의 유효성에 대한 실증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Staten, Elliehausen and Lundquist(2002)는 이러한 실증연구를 했다.

논문 타이틀 :

The Impact of Credit Counseling on Subsequent Borrower Credit Usage and Payment Behavior
(Monograph #36, Credit Research Center, Georgetown University, March 2002)

결론 :

- 지속적인 카운슬링을 경험한 채무조정자는 ① 연체 실적이 감소하고 ② 보유한 카드 수가 감소하는 등 채무 행동을 개선시켰다.
크레딧 카운슬링은 금전 관리 능력이 낮은 채무자 구제에 유효한 수단이다.

【논문 개요】

분석 방법 :

카운슬링을 받은 채무자 약 1만 4천명을 대상으로 유효성에 관하여 3년에 걸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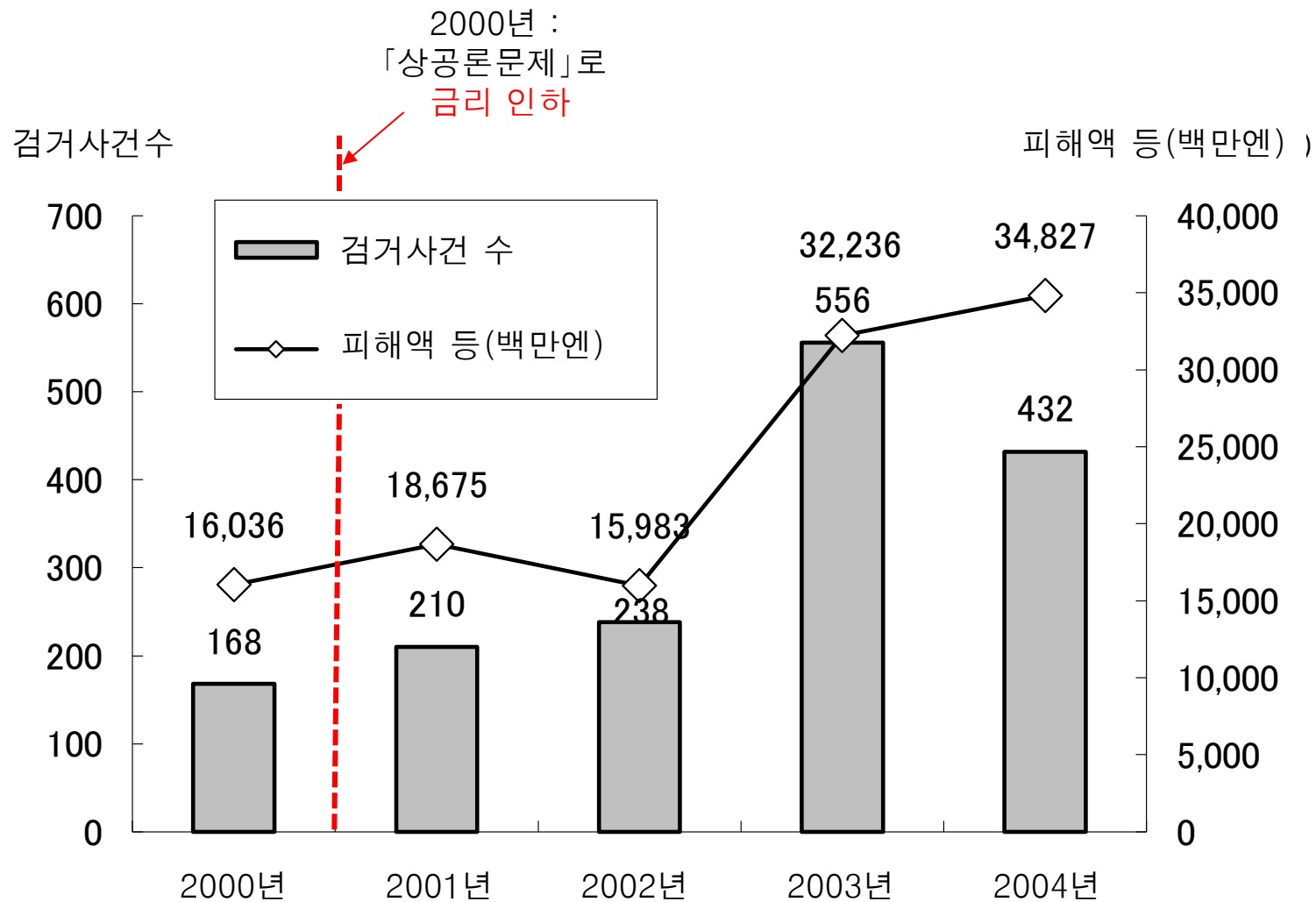
- ① 크레딧 카운슬링이 채무자의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 ② 카운슬링 경험자의 대부분은 카드 수, 부채금액, 연체횟수를 감소시켰다.
- ③ 카운슬링 시 비교적 상황이 좋지 않은 채무자의 효과가 컸다.
- ④ 카운슬링을 받은 채무자는 미경험자와 비교하여 대체로 개선을 경험했다. Empirica 스코어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도 기타 변수에서 개선이 보였다.
- ⑤ 카운슬링을 받고 3년이 지난 후에 카운슬링을 경험한 고객의 연체 실적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
- ⑥ 상기 개선 항목은 크레딧 카운슬링에서 제공된 구제프로그램 내용과 일치한다.

상한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
(4)

④ 증가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감소해야 할 불법사금융 적발이 증가한 배경

2000년 개정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 급증



【출전】 경찰청 「생활경제사범 검거 현황」 (2000~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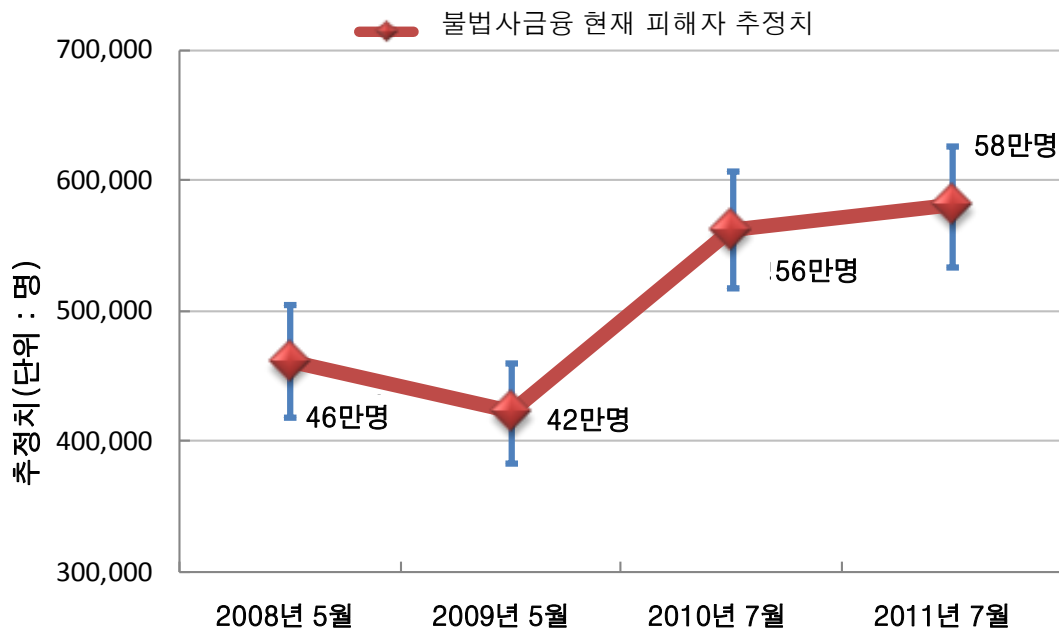
2010년 완전시행 후의 불법사금융 사건 추이



【출전】 경찰청 「2013년 생활경제사범 검거 현황」 (2014년 3월)

다시 활발해진 불법사금융 피해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 (피해자 수)의 추정치 추이



추계 피해자 수(단위 : 명)			
	추정 하한	±0	추정상한
2008년 5월	418,000	461,000	505,000
2009년 5월	383,000	422,000	461,000
2010년 7월	518,000	562,000	607,000
2011년 7월	534,000	581,000	62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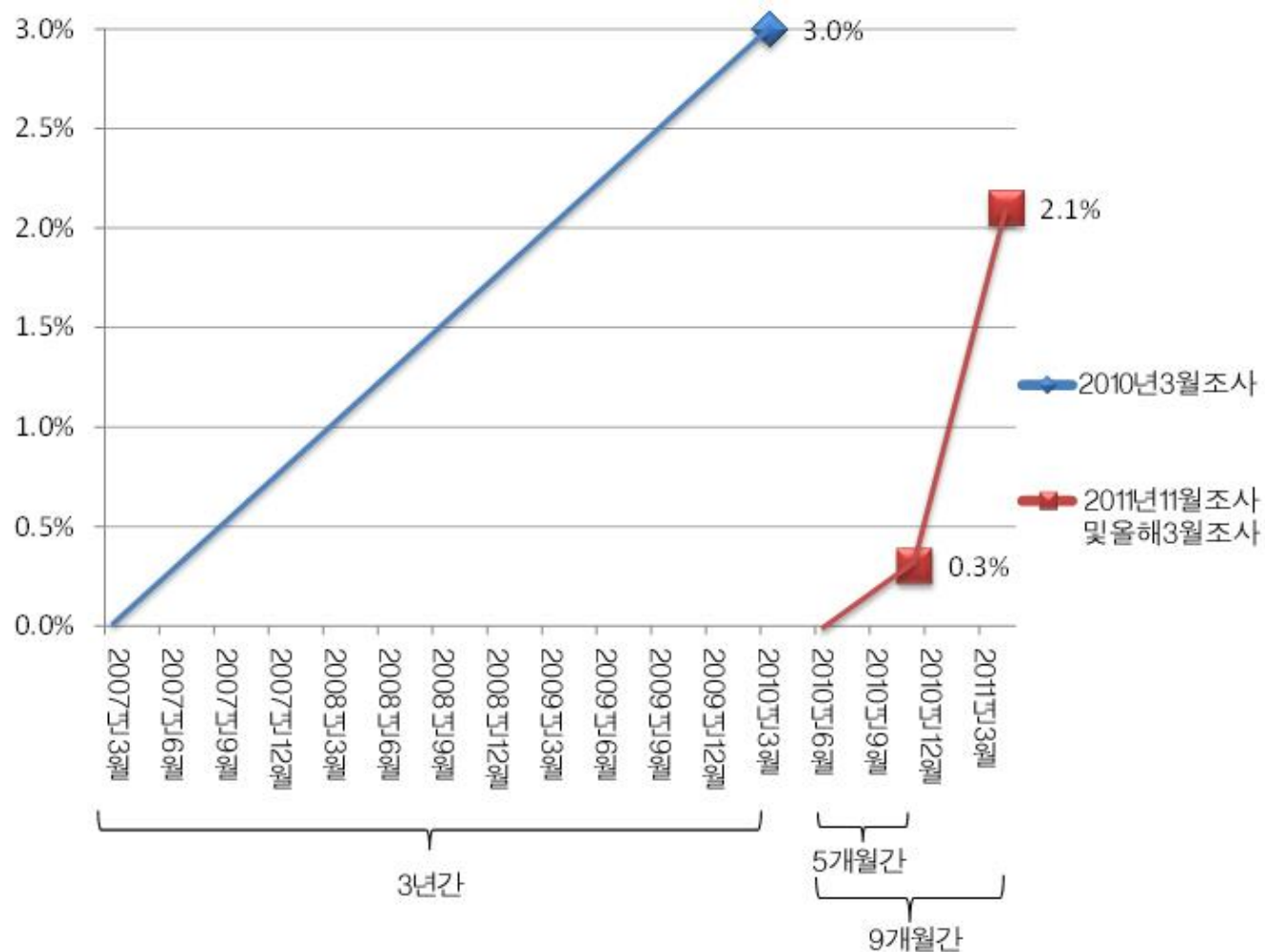
✓ 불법사금융을 현재 이용하는
자는 46만명(08년), 42만명
(09년), 56만명(10년) 그리고
58만명(11년)으로 추계

➤ 02년 당시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는 51만명~
104만명으로 추계되었다.

✓ 불법사금융 피해는 2002년
당시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다.

자료 : 소비자금융이용자 대상 양케트조사 (2008년 5월,
2008년 5월, 2010년 7월, 2011년 7월)

금융청 실태조사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률 추이



【출처】 금융청 「대금업 이용자에 대한 의식조사」 (조사 : 2010년 3월, 동년 11월, 11년 3월)

금융청 앙케트 조사에 대한 비판

「금융청의 엉터리 자료 발각! 역시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다」

『일간 겐다이(현대)』 2011년 8월 1일

지미대신(오른쪽)
히가시 부대신 모두 관료에게
속고 있다

대금업법 개정 1년

역시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다



대금업법이 개정되고 1년이 경과한 것을 계기로 금융청은 올해 6월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감소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 개정 전인 작년 3월 3.0%였던 이용자가 올해 4월에는 2.1%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히가시 부대신은 “지금 시점에서 제도를 개정할 부분은 없다”고 자신 있게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청의 조사방법을 살펴봤더니 감소했다는 발표는 새빨간 거짓말로 오히려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대금업법 개정의 영향과 대책에 관한 스터디’에서 앙케트 질문서를 요청한 결과 엉터리라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작년 3월에 실시한 앙케트에서는 “과거 3년간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다. 그런데 올해 4월에는 “개정 대금업법 시행 후에...”라고 질문했다. 법은 작년 6월 18일에 시행되었으니 불과 10개월간의 이용자와 3년 간의 이용자를 비교한 셈이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더구나 금융청은 개정법 시행 후 5개월이 지난 작년 11월에도 동일한 조사를 시행했는데 그 때에도 “개정 대금업법

시행 후에 ...”라고 질문하여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0.3%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과 5개월 만에 0.3%에서 2.1%로 증가한 것이다. 오히려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실은 이 문제를 두고 경찰청의 조사에서도 썩수가 있었다. 경찰청은 “다중채무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자는 감소했다”고 어필하고 있지만 오히려 생활고로 인한 자살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다중채무로 인한 자살자수의 감소분과 생활고로 인한 자살자수의 증가분이 정확히 일치한다.

대금업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도쿄정보대학의 도우모토 교수는 “애써 실시한 실태조사인데 통계를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불신만 줄 뿐이다. 현장이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증감을 포착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발표 단계에서 상부의 어떠한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라고 말했다. 대금업법 개정 후 변호사나 사법서사가 과불금 청구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중 90%가 신고를 누락한다는 국세청의 조사도 있다. 역시 개악법이 지 않은가? 금융청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금융청의
엉터리
자료
발각!

역시 불법사금융은 증가

금융청 조사의 문제점

도쿄 정보대학 우치다 오사무 준교수

금융청이 실시한 이용자 앙케트 조사에 대해 다이라 마사아키 중의원 의원은 “설문 내용이 상이한 조사를 시계열로 정리했다. 의도가 불순하다”라고 비판했다(3면 참조). 이 조사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통계분석 전문가인 도쿄정보대학의 우치다 오사무 준교수에게 해설을 부탁했다.

앙케트 조사는 데이터 수집방법의 하나로 엽태나 분야에 상관없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앙케트 조사가 널리 이용되는 최대 이유는 간편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은 이런 간편함이 최대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앙케트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질문과 응답의 준비이다. 안이하게 생각하여 어느 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질문을 설정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질문으로 구해진 회신 데이터를 통계학적 방법으로 해석한다 해도 그 결과에 대한 신빙성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금융청이 실시한 앙케트 조사를 이용한 시계열 비교의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0년 3월 실시한 앙케트 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지 못한 경우의 대응”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는 응답자는 3.0%로 집계되었다. 이에 비해 2010년 11월 실시한 앙케트 조사결과에서는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0.3%로 집계되어 1/10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대금업법 완전 시행의 폐해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듯이 보고했다.

하지만 완전 시행 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개정 대금업법 시행 후에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지 못한 경우의 대응”을 질문하여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자의 비율을 집계한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개정 대금업법 시행 후한 말하자면 “최근 5개월 이내가 된다. 3년 이내에 이용한 사람의 비율과 5개월 이내에 이용한 사람의 비율을 비교하여 감소했다고 하는 보고는 무의미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보는 사람에게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결과이다.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시기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3년이 경과한 후에 비교해야 감소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3년을 기다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감소경향인지 증가 경향인지 관찰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2011년 4월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여 이 때에는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비율이 2.1%로 나타나 이전 조사보다 증가경향을 보였다. 이때에도 “최근 9개월 이내” 이용한 자의 비율이어서 완전 시행 전의 결과인 3%와 비교해도 의미가 없으며 수치가 낮은 것이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2010년 11월 조사와 2011년 3월 조사를 살펴보면 불과 4개월이 경과했을 뿐인데 0.3%에서 2.1%로 증가하여 4개월간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사람들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는 3년간 3.0%, 3년간부터 5개월 후에 3.3%, 9개월 후에 5.1%일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필요할 것이다. 즉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감소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최근 증가경향인 점이 시사되었다.

이 예가 말하듯이 앙케트 조사에 따른 시계열 비교는 질문 방법을 동일하게 하여 비교해야지 의미가 있다. 특히 행정기관이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조사결과는 정책을 반영된다는 점을 깊이 의식하여 조사 스펙을 넓게 공개한 상태에서 그 분석 결과를 정확하게 공표해야 한다.

(자료 : 금융청 위탁조사 “대금업 이용자에 대한 의식조사”)

『역시 불법사금융은 증가 금융청 조사의 문제점』
『일본금융신문』 2011년 8월 10일

피해 상담을 받지 않는 불법사금융 이용자(1)

- 채무자와 불법사금융의 불가사의한 관계 -

통장 · 카드 담보 불법 대출 혐의

불법사금융 공적 급부금 표적

연금, 생활보호, 아동수당 추심 없이 회수



▲ 다카에스 용의자의 자택에서 압수된 통장과 현금카드(도미구스시 경찰서 제공)

도미구스시 경찰서는 10월말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담보로 잡고 초고금리(1일 0.3% 이상)로 대출했다고 하여 대금업법 위반과 출자법 위반 혐의로 대금업자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서의 조사에서 남성은 입수한 피해자의 통장에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공적 급부금을 확보해 추심의 번거로움과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회피했다고 한다. 고금리로 대출해주고 이를 확실하게 회수하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새로운 수법이 알려진 것이다(사회부 · 히라지마 나쓰미)

체포, 기소된 이는 나하시 히가와에서 대금업을 하는 다카에스 세이치 피고로 도미구스시 경찰서는 피고의 자택에서 타인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약 100세트를 압수했으며 수사를 하는 중에 교묘한 수법이 발각되었다고 한다.

■ 피해상담은 제로

압수한 거의 대부분의 통장에는 생활보호, 연금, 아동수당 등 공적 급부금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고 한다. 입금 날이 되면 용의자가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급부금이 정지되지 않는 한 용의자의 자택 부근에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만 있다면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이다. 게다가 고객의 자택이나 직장으로 추심하러 갈 필요도 없어 일석이조였다.

피고의 자택에서는 차용증 약 400점이 발견되었는데

오키나와현의 한 경찰 간부는 최근 보기 드문 피해 규모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 등에 접수된 피해상담은 없었다.

피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의리 외에 추심으로 인한 분쟁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다른 불법사금융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 피고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는 증인이 없었다면 피고는 발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 구조적 맹점 공략당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대다수는 사고를 당한 가족의 병원비나 이사비용 등 갑자기 필요한 자금수요를 변통하기 위해 약 3만~150만엔을 빌렸다고 한다.

생활약자에게 지급되는 공적 급부금이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금리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효율적으로 회수되는 잘못된 구조이다. 통장과 카드만 건네주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간편함이 입 소문을 타고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적 급부금이 지급될 텐데 결과적으로 통장을 담보로 잡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 배만 볼린 것이라고 한다. 형식적인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공적 급부금의 구조적 맹점을 불법사금융업자가 공략한 것이다. 채권자는 물론 채무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피해 상담을 받지 않는 불법사금융 이용자(2)

- 채무자와 불법사금융의 불가사의한 관계 -

소프트불법사금융 주의, 추심은 친절해도...

협박적인 추심을 하지 않는 일명 ‘소프트 불법 사금융’ 이라고 불리는 수법으로 고금리 대출을 계속해온 남성 4명 일당이 2일 가나가와현 지방경찰청에 대금업법 위반(무등록) 등으로 체포되었다.

지방경찰청은 이들이 전국의 약 36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약 4,300만엔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의 생활경제과와 다카쓰 경찰서에 대금업법 위반(무등록)과 출자법 위반(초고금리) 혐의로 체포된 이들은 홋카이도 구시로시 출신의 무직 스도 유스케 씨 등 남성 4명이다.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경까지 도쿄도 스미다구의 한 아파트를 거점으로 ‘픽업’ 등의 명칭으로 무등록 대금업을 영위해왔다. 이들은 사이타마시의 여성 회사원 등 남녀 3명에게 94만엔을 대출해주고 법정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약 120만엔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4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작년 2월경부터 대금업을 시작하여 법정금리의 37~242배에 달하는 금리로 대출을 해왔다고 한다.

수사 관계자는 소프트불법사금융이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나 계좌를 사용하고 협박적인 추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금리가 높더라도 눈 앞의 돈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 많다” 며 경종을 울렸다.

불법사금융에 통장 양도 혐의

현경찰청 경사를 서류송청, 징계면직처분

사이타마현 경찰청은 18일 우라와시 니시 경찰서 교통과의 남성 경사를 사기와 범주수익이전 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이타마 지검에 서류송청 하였다. 이 경사는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통장을 양도하고 현금을 수취한 혐의로 징계면직 처분 당했다. 또한 감독책임으로 동 경찰서 소속 시메기 서장을 본부장 주의, 교통과 남성 계장을 소속장 주의 처분했다.

경사는 작년 11월 7일 사이타마시내의 한 은행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목적을 은폐한 채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 받고 동월 11일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하여 현금 5만 4천엔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사는 2월 28일 무단 결근했는데 동 경찰서의 동료 5명으로부터 총 약 350만 엔의 대출이 있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후 조사에서 파친코에서 손해를 입은 후 대출을 받고 고민해왔던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2월 28일은 동료에게 대출을 갚는 날이었다.

경사는 2000년경부터 파친코에 빠져 소비자 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2006년에 청산했지만 작년 봄 즈음부터 다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여러 곳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70만엔 정도의 대출이 있었으며, 동료에게는 자녀로 인해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경사는 평소 성실했으며 주위의 신뢰도 두터웠다고 한다. 주위에서는 파친코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기타자와 카즈히로 수석감찰관은 직원이 불미스런 일을 일으킨 점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현민에게 깊이 사죄했으며 직원에 대한 직무윤리교육과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여 재발 방지를 도모해나가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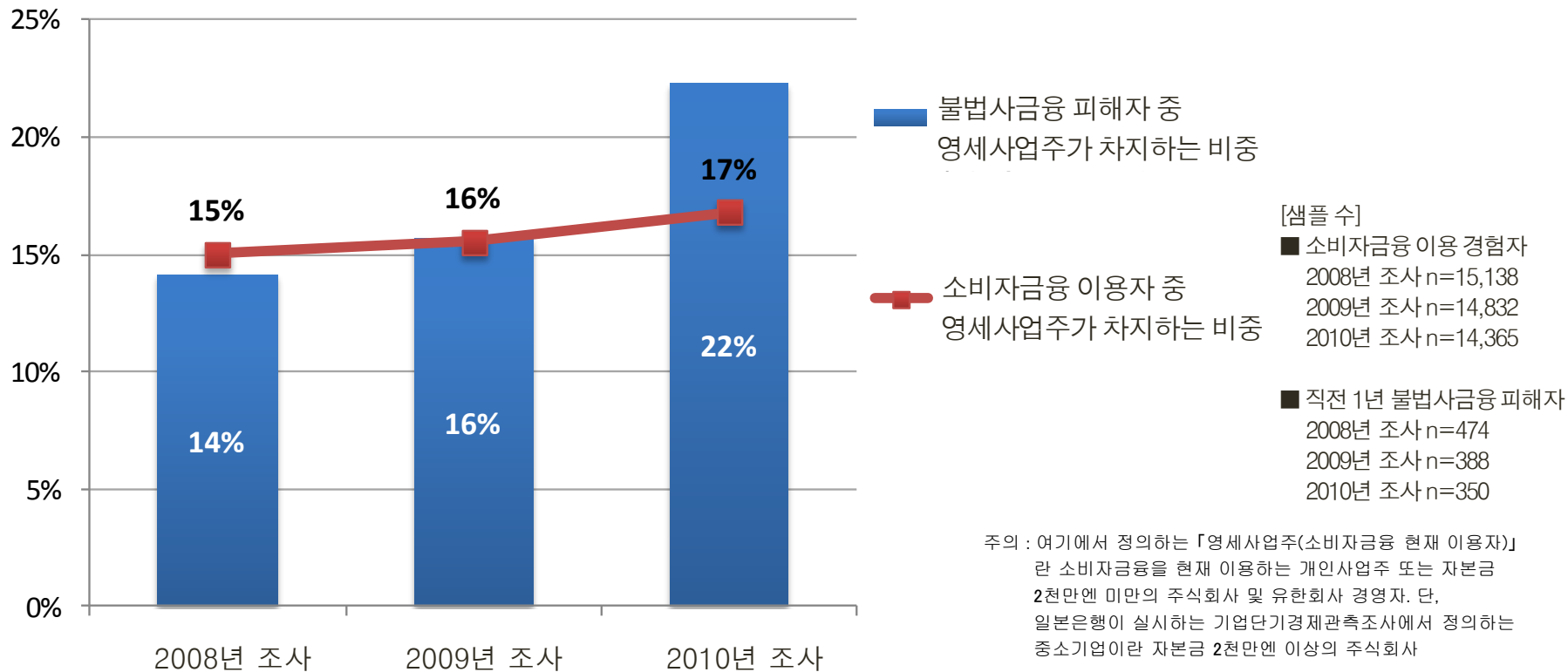
「불법사금융에 통장 양도 혐의」

『사이타마신문』 2012년 6월 19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영세사업주

✓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 **영세사업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 2008년 14%에서 2010년에는 22%로 증가
- 한편 소비자금융을 이용하는 영세사업주의 비중은 비슷한 수준



「도산 회피」 약점 노려

개정 대금업법 영향 등록 대금업자의 엄격한 심사

중소기업 노린 불법사금융 일당

효고현과 오사카부 지방경찰청 합동수사본부가 28일 대금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한 불법사금융 일당의 수법은 중소기업 대상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상공론을 내세워 10만엔 정도의 소액을 즉시 대출하는 수법이었다. 불경기로 도산을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중소기업의 약점을 노린 것이다. (31면 관련)

상공론과 관련하여서는 1999년에 대표주자인 ‘니치에이’의 사원이 신장을 팔아서라도 채무를 상환하라는 식의 협박성 추심을 하여 형사 사건으로 발전한 적이 있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상한금리 인하 등 출자법과 대금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06년에는 개정 대금업법이 시행되면서 벌칙 도입 및 규제 강화가 단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0년 6월에 완전시행되었다. 연 292%였던 출자법의 상한금리는 20%로 인하되었고 벌칙은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되었지만 전국의 불법사금융사범 적발 건수는 감소하지 않았다. 효고현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은 393건으로 2000년(168건) 대비 2배에 달했다고 한다.

이렇게 불법사금융사범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로는 개정 대금업법의 영향으로 등록 대금업자의 심사가

엄격해진 데 더해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본경기도 한몫하고 있다. 도쿄상공리서치의 집계를 보면 올해 7월 기업도산현황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웃돌고 있다. 이로 인해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소규모 영세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사금융 일당이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7년경이었다. 이후 전국 46개 도도부현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오사카부 경찰청 등은 “등록 대금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영자가 최후의 보루로 이용한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금융 문제에 대해 해박한 오카야마 변호사회의 오카모토 변호사는 “궁지에 몰린 채무자는 패닉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권유하면 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 금융업계가 연대한 세이프티넷에 대한 제도,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키야마 쇼조)

『도산 회피』 약점 노리는 개정 대금업법 영향
『산요신문』 2011년 9월 29일

중고차 판매를 가장한 불법적인 대부

용의자 6명 체포

중고차 판매를 가장하여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경찰청 생활경제과는 14일 사이타마현 가스가베시 소재 중고차 판매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한국 국적의 문일섭 씨와 전 경영자인 하세베 씨 두 용의자와 전 종업원 등 총 6명을 출자법 위반(탈법 행위, 고금리) 혐의로

체포했다. 동 과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약 6500만엔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피해를 눈치채지 못하게 대출

오키나와현 출신 일당의 불법사금융 사건

나가노 중앙 경찰서와 나가노현 치방경찰청 생활환경과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금업법 위반(무등록 영업)과 출자법 위반(고금리) 등의 혐의로 8명을 체포한 사건. 현 내의 피해자 5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에게 957만엔을 대출한 혐의로 입건했다. 동 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들은 도내의 다른 불법사금융 조직에서 2009년 7월에 독립한 총괄 역활의 치바나 피고(10월 판결 예정)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체포된 8명 중 7명은 오키나와현 출신이라고 한다. 이미 7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연락처가 기재된 고객 명부 등을 사용하여 DM 및 전화로 권유했다고 한다.

동 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은 동 경찰서는 작년 11월 출자법 위반(고금리) 혐의로 남성을 체포했다. 피해자인 여성은 경찰에게 피해자 진술을 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자신이 법정 금리를 훌쩍 뛰어넘는 이자를 지불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일당 중 이 남성은 실행 역활을 맡고 있었으며 3월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일당은 고객에게 매우 신사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차츰차츰 고객을 옥죄어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폭력적인 추심 등은 하지 않으며 상황이 지체될 것 같으면 상환기한을 연장해주었으며, 컨설턴트처럼 회사의 자금 융통 관련 상담도 해준다고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대출을 실행했다. 이자가 법정 금리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계속 대출을 연장하면서 유지해왔다고 한다.

피해 여성은 지금도 피해를 입었다는 느낌은 그다지 들지 않는다면 몇 차례 이용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을 지도 모른다고 고백했다.

(마쓰자와 카나에)

『소프트 불법 사금융』 신사의 가면
『시나노 마이니치 신문』 2011년 9월 26일

과는 고객이 부담하는 차액이 불법적인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야시 나옴이)

『중고차 판매를 가장한 불법 대출』

『마이니치 신문』 2014년 5월 15일

영세 사업주의 피해가 주목을 끄는 불법사금융 사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특징

이용자 계층

1. 영세사업주가 많다
(사업자금융의 대체?)
2. 저소득자세대가 많다
(소비자금융의 대체?)
3.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가 많다
(소비자금융의 대체?)
4. 고령자가 많다
(공적연금담보대출의 대체?)
5. 도박의존자가 많다
(소비자금융의 대체?)

자금용도

【실제 수요에 따른 대출】

- 의료비
- 사업자금
- 돌발적인 자금수요(연금 수급자)

【일종의 의존증에 의한 차입】

- 파친코 및 경마
- 불필요한 물품구매(미용, 양모제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속성

n=306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남성	6.2%	17.3%	26.1%	27.1%	76.8%
여성	3.9%	7.5%	7.8%	3.9%	23.2%
계	10.1%	24.8%	34.0%	31.0%	100.0%

자료 : 불법사금융 이용자アンケート조사(2011년 7월)

《참고》 소비자금융 이용자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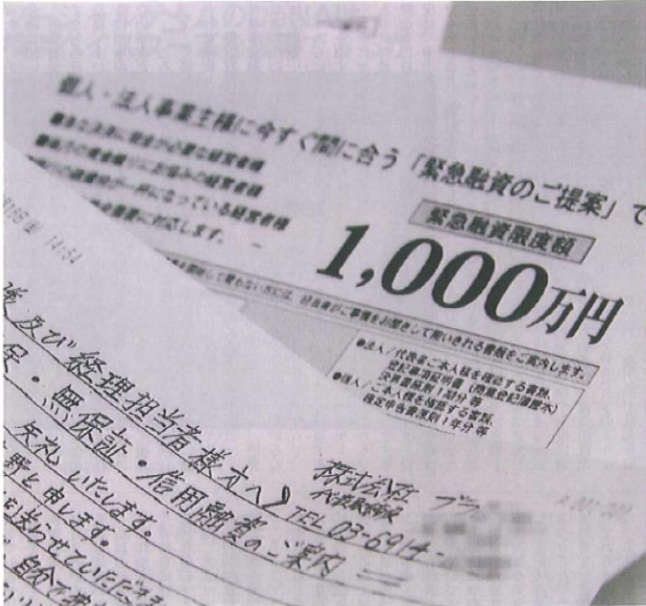
n=1893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남성	5.2%	22.1%	28.3%	19.9%	75.4%
여성	4.8%	9.5%	7.0%	3.2%	24.6%
계	10.0%	31.6%	35.3%	23.1%	100.0%

자료 : 소비자금융 이용자アンケート조사(2011년 7월)

사실은 지난번 금융청에서도...

[이후에도 언론으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고 있다]

News&Analysis クロースアップ Close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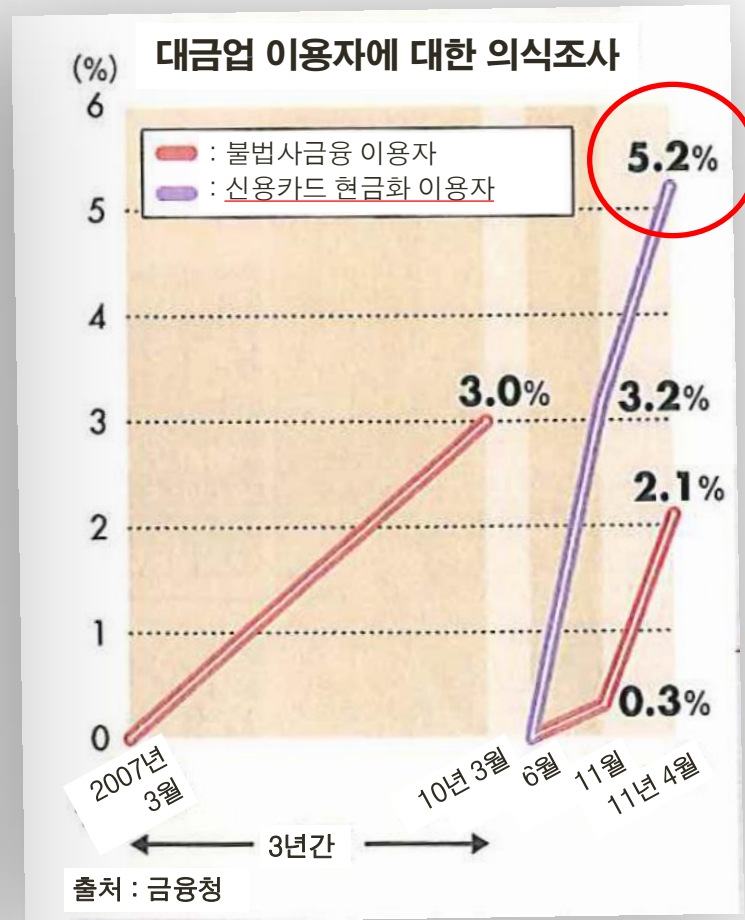
**최신 자료가 보여주는 금융청의 실정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재횡행” 실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오히려 정점인 2002년 수준까지 이르렀다” 충격적인 분석을 주장하는 이는 도쿄경보대학의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다. 10월에는 금융청의 자의적인 데이터를 뒤엎는 결정적인 조사결과를 공표. 금융청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2000년 법 개정으로 상한금리를 40.004%에서 29.02%로 인하한 후 그 부작용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는 확대되었다. 피해가 정점이었던 2002년 전국대금업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는 51만~104만명으로 추계되었다.

하지만 도우모토 교수가 중심이 되어 실시한 “불법사금융 이용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2011년 7월 기준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추계는 58만명까지 늘어났다. 2003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벌칙 강화를 주축으로 하는 불법사금융대책법이 시행되었지만 약 10년 사이 다시 2002년 “불법사금융 최전성기”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소비자금융이 담당해온 역할을 돌아보면 납득이 된다.

소비자금융 이용자 중에는 영세사업자가 많다. 이는 거래처가 결제하는 날과 직원 급여 지불일 간 수십일의 자금을 융통...



출전 : 「주간 다이아몬드」 2011년 11월 5일(상기 두건 모두)

멈출 줄 모르는 카드 현금화 피해, 진화하는 「위장 불법사금융」

2006년 법 개정 이후 신문에 보도된 신종 위장 불법사금융 사례
(카드 현금화 제외)

보도일	신문	기사제목	내용(신종 위장 불법사금융)
09년 12월 24일	류큐신보	위법 금리로 대출	「보석판매」를 위장한 불법사금융 적발
10년 9월 14일	요미우리신문	「금화 바로 현금화」 주의	「금화판매」를 위장한 불법사금융 적발
10년 10월 20일	사이타마신문	차량 담보 고리 대출 용의	「차량 담보 대출」을 위장한 불법사금융 적발
10년 10월 31일	홋카이도신문	통장 담보 생활보호비도	「가구 리스」를 위장한 불법사금융 적발
10년 12월 10일	공명신문	「현금화」 이용, 200만명	「렌탈 에어컨」을 위장한 수법 소개
11년 2월 2일	나가사키신문	나가사키현 지방경찰청 적발, 광역 불법사금융 피해	「전자머니」를 위장한 불법사금융 적발
11년 10월 5일	류큐신보	수정 구슬로 위장하여 고금리 대출	「수정 구슬 판매」를 위장한 불법사금융 적발
12년 2월 27일	오이타합동신문	금속판매로 위장하여 위법 고금리	「금속판매」를 위장한 불법사금융 적발
12년 2월 28일	사이타마신문	차량 담보로 초고금리	「자동차 리스」를 위장한 불법사금융 적발
12년 3월 1일	쥬니치신문	전당포 위장하여 최대 95%의 고리 대출	「전당포」를 위장한 불법사금융 적발
12년 4월 9일	홋카이도신문	출자법 위반 용의 남성 체포	「TV리스」를 위장한 불법사금융 적발

저가 상품을 고액으로 구입시키고
일정금액 제한 후 현금 지급



카드 현금화 관련 불법사금융 사건으로 마쓰모토 용의자일당이 고객에게 고액으로 구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액세서리

“카드 현금화” 대출

대금업자 3명 재체포

출자법 위반 용의

후쿠오카현 지방경찰청은 7일 현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이용하여 저가 상품을 고액으로 구입하게 하고 일정 금액을 제한 후 현금을 캐쉬백하는 이른바 “카드 현금화” 수법으로 고금리 대출을 한 기타큐슈시의 대금업체 ‘지스팩’의 대표 마쓰모토 용의자(다른 건으로 동범 위반하여 기소) 등 3명을 출자법 위반(고금리 금지를 피하기 위한 행위) 혐의로 다시 체포했다.

현 경찰청은 마쓰모토 용의자가 경영하는 점포 ‘쥬얼리 트러스트’의 벳푸점과 나가쓰점(모두 폐업)을 무대로 2010년 2월경부터 약 1년간 동안 약 2천건, 총 1억수천만엔의 매매계약을 체결시키고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현 경찰청 생활환경과에 따르면 카드현금화와 관련하여 동범 위반을 적발한 사례는 전국에서 세 번째라고 한다.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매대는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 체제포된 이는 지스팩의 전직원인 모리 씨(쥬얼리 트러스트 벳푸점 전 점장)와 키베 씨이다. 이들이 체포된 혐의는 벳푸 시내의 무직 여성과 오이타 시내의 회사원 남성을 상대로 총 32만엔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법정금리(1일 0.3%)를 초과하는 약 8만8천엔의 이자를 취한 혐의이다.

동 과에 따르면 모리 용의자는 용의를 인정했으나 다른 2명은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체제포된 3인은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금속 판매를 위장하여 고금리로 대출을 하여 동범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체포되어 기소된 상태이다.

“최단 5분만에” 로 고객 유인

“최단 5분만에 현금으로!!”, “절차 간단, 심사는 일절 불필요”. 카드 현금화 관련 불법사금융 사건의 무대가 된 점포인 ‘쥬얼리 트러스트’는 이러한 문구로 고객을 유인했다.

현 경찰청 생활환경과에 따르면 카드 현금화는 3, 4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는 신용카드회사가 결제금액을 확실하게 입금하기 때문에 업자 측은 대손이 될 리스크가 없는 점이 이유라고 한다.

마쓰모토 용의자 일당은 가치가 거의 없는 물품을 고객 액세서리를 판매한 것 처럼 위장하여 65~70%를 고객에게 캐쉬백했다. 카드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25~30%가 수중에 들어왔다고 한다. 상품은 후일 택배로 보내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배송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 관계자는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이라는 의견이다.

「『카드 현금화』 대출 대금업자 3인 재체포」 『오이타합동신문』 2012년 4월 7일

불법사금융의 금리 분석(1)

불법사금융 이용자 대상 앙케트 조사를 토대로 한 불법사금융 금리 추계식

$$\ln Y = -0.0736 * X_1 - 2.26 * 10^{-6} * X_2 + 8.20 \quad (\text{식 1})$$

Y 약정금리(단위:%(연리))

X_1 대출기간(단위:일) 단, 추계에서 유효한 기간은 2 ~ 30일

X_2 원금(단위 :엔)

결정 계수 R^2	0.541
자유도 조정 원료 결정계수 R^2	0.522
표본수(n)	50人

	표본오차	t값	P치
절편	0.204	40.2	4.67E-38
대출기간(일)	0.0126	-5.86	4.36E-07
원본(엔)	8.53E-07	-2.65	0.0109

주의 : ① 집계샘플은 직전 3년간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불법사금융 완제자에 한정(n=50) ② 집계한 샘플은 대출기간 2~30일에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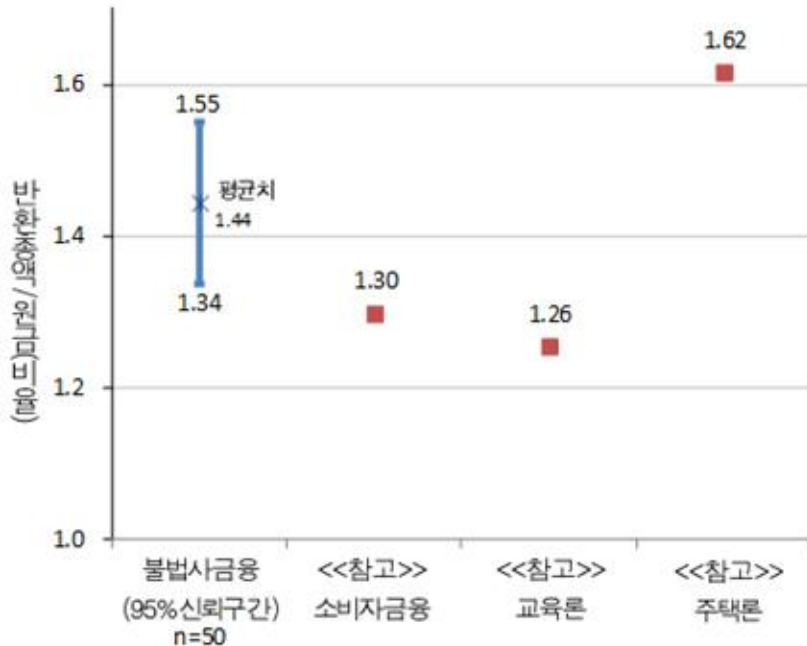
자료 : 불법사금융 이용자 대상 앙케트조사(사전조사) (2011년 6월)

상기(식1)에서 추계된 불법사금융시장의 약정금리(연이율)

		원금		
	대출내용	¥10,000	¥100,000	¥300,000
대출 기간	7日	2144% (4,112)	1749%	1112%
	10日	1719%	1402%	891%
	14日	1280%	1044%	664%
	21日	764%	623%	396%

불법사금융의 금리 분석(2)

불법사금융 이용자(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불한
상환총액과 원금(대출액)에서 [반환 총액/원금] 비율을 집계



불법사금융의 「상환 총액/원금」의 비율

평균치 1.44(1만엔을 빌린 경우 지불한 상환
총액은 1.44만엔)

95%신뢰구간에서 1.34~1.55(1만엔을 빌린
경우 지불한 상환 총액은 1.34만엔~1.55만엔)

【참고】

소비자금융(연리 : 17.8%, 대출기간 : 3년)은 1.30

교육론(동 : 4.7%, 동 : 10년)은 1.26

주택론(동 : 3%, 동 : 35년)은 1.62

「반환 총액/원본」의 비율을 비교하면 불법사금융
으로부터 빌린 대출에 따른 경비는 타 금융상품의
비율과 괴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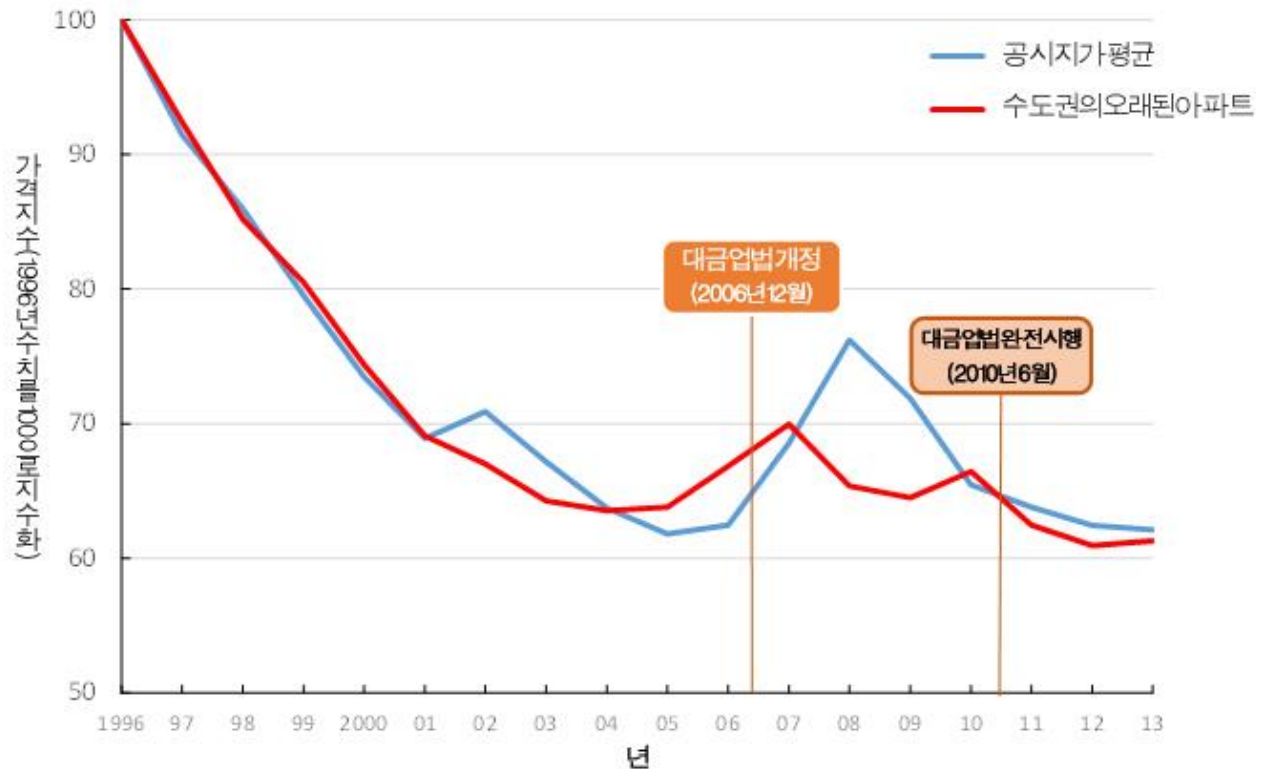
도대체
대금업법
개정
무엇이었던
말인가?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

「대금업법」은 심각한 디플레이션 경제 하에서 실시되었다

- ◆ 90년대 이후 일본은 심각한 디플레이션 경제에 직면
- ◆ 당시 소득 및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부채를 짊어진 상환 곤란자 수는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
- ◆ 정부는 비상사태조치로 채무탕감책과 엄격한 차입제한(대금업법)을 도입
- ◆ 하지만 서민금융시장은 붕괴 !
- ◆ 대출 가능 층(공무원 등)과 대출곤란층(자영업 · 영세 기업 종업원 등) 간의 격차 확대 !

현재 부동산 가격 추이



출전 : 도쿄증권거래소, 「오래된 아파트 가격 추이」, 2013 국토교통성, 「지가공시」, 2013

주의 : ① 공시지가는 도도부현 자료를 단순 평균으로 산출

② 「수도권의 오래된 아파트」란 도쿄증권거래소가 산출한 「오래된 아파트 가격 추이」의 그림 중 2013년의 수치는 동년 4월 수치를 인용

2006년 당시 정부 여당의 최종 정책 결정자인 마스하라 소위원장의 강연 요지



“괜찮겠지” 라며 개정

JCFA(일본소비자금융협회)는 7월 27일 제일호텔도쿄에서 경영 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대금업법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 내각부 부대신이며 중의원 의원이었던 마스하라 요시타케씨(=사진)가 발표했다.

경영연구위원회의 아오키 야스히로 위원장은 “대금업법이 완전 시행되었는데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 어떻습니까? 6,7월이 상여금

지급달인 점을 차치하더라도 자금수요가 상당히 감소한 듯합니다. 자금수요는 어디로 갔을까요? 모두 불법사금융으로 갔다고 볼 수는 없으니 고객이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가을 무렵이 되면 자금수요가 발생하는 시기인데 과연 자금수요가 회복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정체될 것인지, 업계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등의 인사말을 했다.

발제자로 나선 마스하라 씨는 2006년에 시행된 대금업법 개정논의 시 자민당 산하 금융조사회의 “대금업제도 등에 관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마스하라 씨는 당시 논의 내용은 물론 통계자료나 보도 등 각종 자료에 대한 재검토와 대금업법의 문제점, 어떠한 사항을 재검토해야 하는 지 등을 발표했다. 입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중채무자로 불리는 대출건수 5건 이상의 요인 분석 및 이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천만명이 넘는 건전한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특히 총량규제 도입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연소득 1/3을 초과하는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③ 입법 당시 출자법과 이자제한법의 관계를 인하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법이 인하되었다. ④ 2006년 1월 대법원 판결이 소비자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과불금 반환 청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금업법을 개정했다. ⑤ 완전시행 전 재검토 규정을 마련했지만 적용되지 않은 채 불발에 그쳤다. 이러한 사항은 물론 각종 자료를 토대로 법 개정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다루었다.

특히 과불금 반환 청구 문제가 대금업자의 급격한 경영 악화를 가져왔으며 다중채무자는 감소하고 있다는 금융청의 공식 견해에 대해 연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연체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등에 대해 지적했다.

법 개정을 계기로 발생한 대금업 관련 각종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본인의 견해를 발표하기도 했다.

과불금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과불금 반환청구를 입법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다. 어느 한쪽의 이익은 다른 한쪽에게는 손실이다. 이는 헌법 28조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자민당에서는 4년 전에 이러한 문제를 검토했다.” 고 발표했다.

“영향 분석 · 검토 불충분”

“이대로라면 불법사금융 양산”

JCFA경영연구위원회 마스하라 요시타케 전 중의원의원

다만 완제자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동의한 후에 완제하여 이미 종료되었기에 이후 임의성, 서면성의 문제로 (과불금을) 거론한다는 것은 계약의 기본이 되는 진위성에 반한다고 본다.” 고 했다.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입법 조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당이 입법조치를 담당할 것인지가 문제라는 지적도 했으며, “사실 재검토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시행 전에 재검토를 했어야 한다. 이자제한법과 출자법도 문제지만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논쟁크라고 하는 시장이 사라질 우려도 있다. 은행과 논쟁크의 영역을 어떠한 형태로 구분해나갈지를 정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는 등의 의견도 발표했다.

출자법에 대해서는 “출자법상 금리인 20%를 초과할 경우 즉시 형사처벌되는 규정은 너무 과하다. 이대로라면 불법사금융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며, 가법적 위법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소위원회장 시절에 소비자와 사업자를 구분하여 상한금리를 검토한 점에 대해서도 “별도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고 하였다.

이자제한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부금액을 10만엔과 백만엔으로 구분했는데 여기에 합리성은 없다.” 라고 하며 금리 수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1954년 입법 당시보다 물가수준이 약 6배로 상승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 중 대금업법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가장 강조한 부분이 총량규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정말 시급히 재검토해야 한다.” 고 호소했다. 총량규제와 유사한 규제로 할부판매법의 “예상지불 가능액” 을 들었는데 “일종의 지불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령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다. 원래 동일해야 하지만 실정에 맞게 운용을 하고 있는 할부판매법이 효율적이다.” 라고 발표하며 “총량규제는 다중채무자 문제의 해결의 기미가 보일 때 바로 폐지해야 한다. 개정 논의 시 채무자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은 채 강하게 주장하는 일부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정해버렸다. 50만엔과 백만엔이라고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사방법이 바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고 발표했다.



“괜찮겠지” 라고 시작된
개정대금업법이라고 하는
사회적 실험

「“괜찮겠지”라며 개정」
『일본금융신문』 2010년 8월 10일

법 개정을 위한 여당 및 정부의 동향

《대금업법 개정 : 2006년 12월》

◆ 2008년 6월 : 내각부 규제개혁회의

- ✓ 대금업법에 의한 엄격한 규제가 자금수요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법률의 실효성에 대해 동 회의 내의 생활기반TF(주관 : 주조 우시오 ·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가 조사 개시
- ✓ 하지만 2009년 7월 총선거로 정권이 자민당 · 공명당에서 민주당으로 이행함으로써 규제개혁회의 기능 자체가 정지

《대금업법 완전시행 : 2010년 6월》

◆ 2010년 7월 : 오사카부

- ✓ 대금업법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상한금리 인상과 총량규제 완화를 주축으로 하는 소규모금융구조개혁특구를 신청
- ✓ 하지만 같은 해 가을 민주당 정권 하에 있던 정부는 오사카부의 특구 신청을 각하

◆ 2012년 5월 : 민주당(당시 여당)

- ✓ 당시 정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정무조사회 산하에 「개정대금업법 검토 워킹팀(좌장 : 사쿠라이 미쓰루 · 참의원 의원)」을 설치하고 대금업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 준비 작업을 개시
- ✓ 하지만 같은 해 11월 총선거에서 야당으로 바뀌면서 작업은 일단 중단

◆ 2014년 5월 : 자민당(현재 여당)

- ✓ 자민당은 정무조사회 산하에 「재무금융부회 · 소액 금융 시장에 관한 소위원회(소위원장 : 다이라 마사아키 · 중의원 의원)」를 설치
- ✓ 현재 재무금융부회에서 심의중

◆ 2014년 6월 : 민주당(현재 최대야당)

- ✓ 민주당의 지지모체인 일본 최대의 산업별단위조합인 UA젠센(전국섬유화학 식품유통서비스 일반노동조합동맹)과 공동으로 법 개정을 위한 스터디를 개시

대금업법 개정의 필요성(부작용의 표면화 대처)

- ① 대금업 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여 디플레이션 악순환으로부터 신속한 탈출을 지향한다.
 - ✓ 사실상 상환이 가능한 층의 대부액까지 감소하고 있는 상황
- ② 법 개정으로 형성된 계층 간의 신용격차를 줄이려 한다.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불행한 사람들” 문제를 해결
 -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 공무원과 한층 더 대출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층의 격차 확대
- ③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불행” 해진 채무자를 공적 부문이 구제하는 사회시스템 정비를 지향한다.
 - ✓ 사법계에서 비대해진 그릇된 과불금 청구 사업과 NPO법인을 이용한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행위 횡행
- ④ 증가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도모
 - ✓ 감소해야 할 불법사금융 적발이 오히려 증가한 배경

소액 금융시장 제도 구축을 위한 방안

1. 안이한 경제규제(상한금리 인하)는 ① 소비를 감퇴시키고 ② 신용 격차를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피해야 한다.
2.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불행”해진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 준비를 지향해야 한다.
 - i. 금전관리능력이 있는 상환 곤란자(실업,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상환이 곤란해진 경우)는 채권자가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ii. 금전관리능력이 없는 상환 곤란자(의존증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상환이 곤란해진 경우)는 채권자가 지자체의 복지부문을 통해 해당 채무자를 유도하여 공적 서비스를 포함한 구제를 해야 한다.
3. 계약의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
 - ✓ 신용정보기관을 정비하여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완비해야 한다.
 - ✓ 음성시장에 자리를 잡은 불법사금융과 친척 및 지인간 거래의 근절을 도모해야 한다.

《참고》 「소비자금융 이용자 대상 앙케트 조사」 의 개요

1. 조사 대상자 실시기관인 인터넷 조사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패널을 대상으로 했다.
2. 조사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앙케트 조사. 대상자에게 메일로 협조 요청하고 앙케트 회신을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 응답자 수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기간 중에는 모두 응답 가능하도록 했다.
3. 조사기간
2006년 조사 : 2006년 5월 15일 ~ 5월 24일
2007년 조사 : 2007년 5월 18일 ~ 5월 30일
2008년 조사 : 2008년 5월 19일 ~ 5월 30일
2009년 조사 : 2009년 5월 11일 ~ 5월 31일
2010년 조사 : 2010년 7월 22일 ~ 8월 16일
2011년 조사 : 2011년 7월 29일 ~ 9월 4일
2013년 조사 : 2013년 1월 15일 ~ 1월 20일
4. 회수 샘플
매년 14만 명을 추출 대상으로 한다.
단, 이 중 소비자금융 이용자(현재 · 과거), 미이용자 중 신청 거절자, 불법사금융 접촉자, 영세사업주(개인사업주 또는 자본금 2천만엔 이하의 기업 경영자)를 추출 대상으로 하기 위해 실제로 분석에서 이용되는 샘플 수는 1.5만명 정도
5. 조사 주체 도우모토 히로시(도쿄정보대학 교수), 우치다 오사무(도쿄정보대학 준교수)